



2023.03 | 창간호

기업지배기구 *Insights*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기업지배기구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기업지배기구 *Insights*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I. 전문가 기고

- ①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 4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Audit&Assurance 부문 COO 김한석
- ②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위기와 기회 • 12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

II. CCG 아젠다

- ① 2023년 이사회 아젠다 • 16
-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 22

III. 데이터 포인트

- ① 국내 상장법인 이사회 다양성 확보 - 여성 사외이사 비중 추이를 중심으로 • 43
- ② 2023 글로벌 감사위원회 서베어로 살펴보는 지배기구의 당면과제 • 47

IV. 주요 규제 동향

- ① IFRS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기준의 방향성 및 지배기구 감독의 시사점 • 53
- ② 2023년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추진과제 • 59

V. FAQ

- ① 주주제안권 • 65
- ② 재무제표 감리 • 67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의 다양한 발간물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 전문가 기고 1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Audit&Assurance 부문 COO 김한석

들어가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

최근 한국과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에게 있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가 많이 회자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여러가지 이슈가 논의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전략적 우선순위로 급부상하면서 국내외 많은 관심 속에 여러 세미나와 연구서적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ESG 경영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장기적 성장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투자자 뿐만 아니라,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집중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부와 소비자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ESG 중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된 이슈 및 관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4년에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하였고, 매년 연구활동을 통해 월간 뉴스레터, 분기별 Brief, 이사회·감사위원회 실무 가이드와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들의 Insight와 전문 자료를 공유하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활동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G) 이슈 대두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규칙, 프로세스 및 관행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주주, 이사회, 경영진,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채권자, 지역공동체와 정부를 포함)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배기구를 “기업의 주주, 경영진, 이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와 연관된 것으로, 기업의 목표를 설정하는 체계 그리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조직이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 도의적, 법적 그리고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직관리와 통제의 체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외 여러 기업들의 회계 불투명성으로 인한 일련의 스캔들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단한 노력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 지배구조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이제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글로벌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개별 기업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영 및 경제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 생존의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정부 규제 당국은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 증대,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전문위원회의 도입 및 활용, 이사회 역할 제고, 주기적 지정감사제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로 대표되는 기업 지배기구는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입니다.

I. 전문가 기고 ①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재무실적 양상

필자는 2021년부터 센터의 리더를 맡으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과연 기업의 재무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ESG기준원(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는 매년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수한 기업의 지배구조 체계가 실제로 해당 기업의 재무실적(매출액, 영업이익, 순자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듯 하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연도의 전후 3년의 실적 추세를 분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선정된 우수기업의 경우에는 2022년 실적까지 고려하였으며, 2022년의 손익은 아직 공시가 되지 않아 3분기 손익을 연환산 하였습니다).

<표 1>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지배구조 우수기업 (비금융부문)

구분	2018년 ¹⁾	2019년 ²⁾	2020년 ³⁾	2021년 ⁴⁾	2022년 ⁵⁾
대상	-	(주)케이티앤지	-	-	-
최우수	SK(주), (주)풀무원,	S-Oil(주)	포스코홀딩스(주)	-	현대글로비스(주)
우수	씨제이프래시웨이 (주)	(주)지에스리테일	(주)케이티, (주)현대에버다임	SK이노베이션(주), (주)현대에버다임	SK가스(주), 롯데하이마트(주)
우수개선	한솔제지(주)	한솔로지스틱스(주)	(주)아모레퍼시픽	(주)LG유플러스	(주)클래시스

기업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율, 이자율, 원자재 가격 등 국내외 여러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2020년 이후에는 COVID-19의 영향까지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전반적으로 재무실적이 향상되거나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상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개연도로 하고, 비금융업종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표 1> 참조).

1) 한국ESG기준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2018년 지배구조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2018.07.17
 2) 한국ESG기준원, 「2019년 KCGS 우수기업 시상」, 2019.10.22
 3) 한국ESG기준원, 「2020년 지배구조 및 ESG 우수기업 시상」, 2020.10.27
 4) 한국ESG기준원, 「2021년 KCGS 우수기업 시상」, 2021.12.03
 5) 한국ESG기준원, 「2022년 한국ESG기준원(KCGS)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2022.12.01

I. 전문가 기고 ①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재무실적 추이분석 결과와 시사점

예상한 대로 최근 5년 동안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선정된 연도를 전후로 하여 매년 성장하거나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로 대표되는 기업 지배기구가 원활히 작동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은 건전하고 균형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2~3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등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최근의 COVID-19 영향,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배구조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위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정비 및 안정된 운영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경영진과 이사회 간의 적절한 협력과 긴장 관계가 유지되며, 사외이사가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도 이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사회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기능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이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많은 기업이 지배구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비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매년 여러 발간물을 발행하고 있으며,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들의 Insight 및 전문 자료와 함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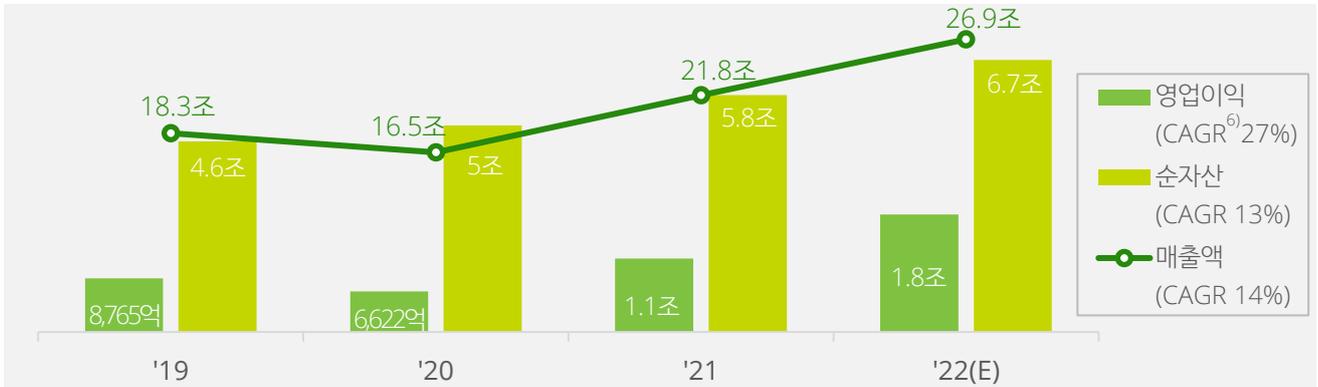
I. 전문가 기고 ①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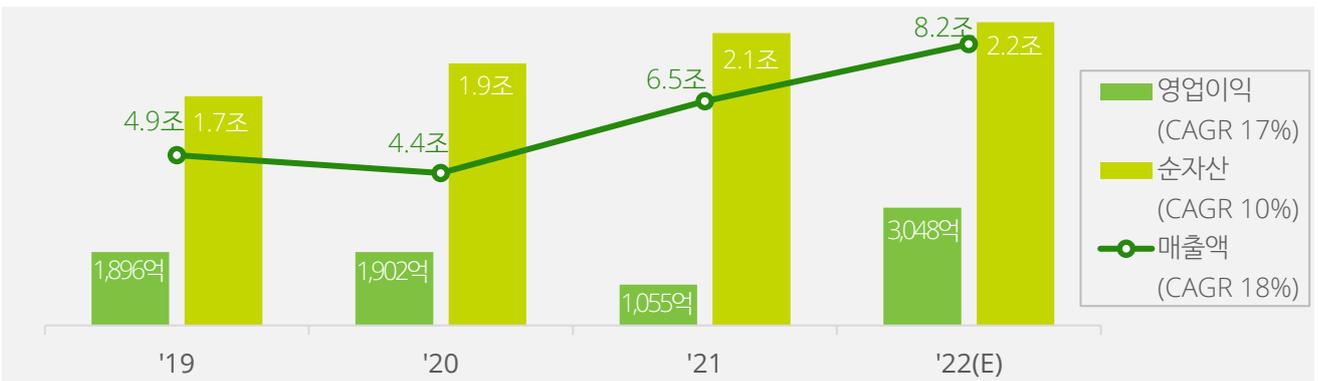
[별첨 1] 지배구조 우수기업(비금융부문)의 주요 재무지표

□ 2022년

• H사



• S사



• L사



• C사



6)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I. 전문가 기고 1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별첨 1] 지배구조 우수기업(비금융부문)의 주요 재무지표, 계속

□ 2021년

- S사



- H사



- L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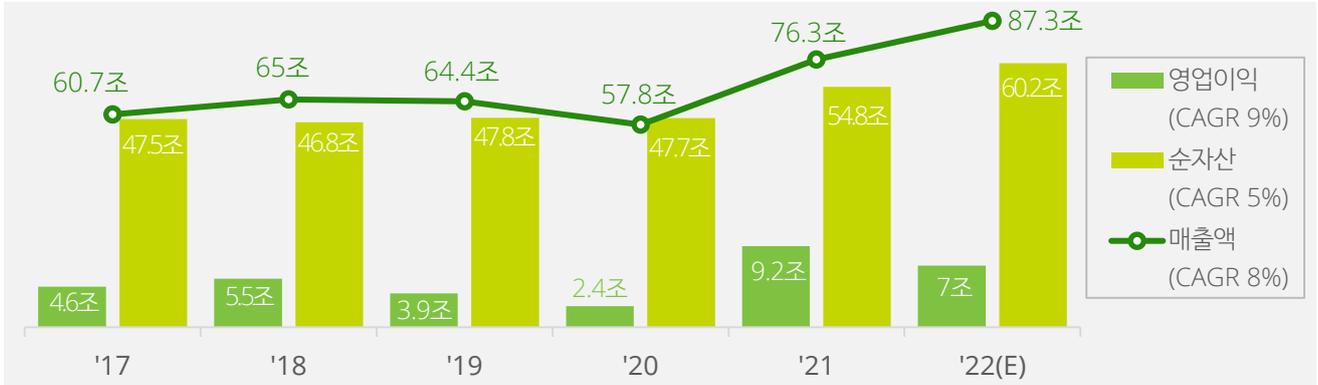
I. 전문가 기고 ①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별첨 1] 지배구조 우수기업(비금융부문)의 주요 재무지표, 계속

□ 2020년

• P사



• K사



• H사



• A사



I. 전문가 기고 1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별첨 1] 지배구조 우수기업(비금융부문)의 주요 재무지표, 계속

□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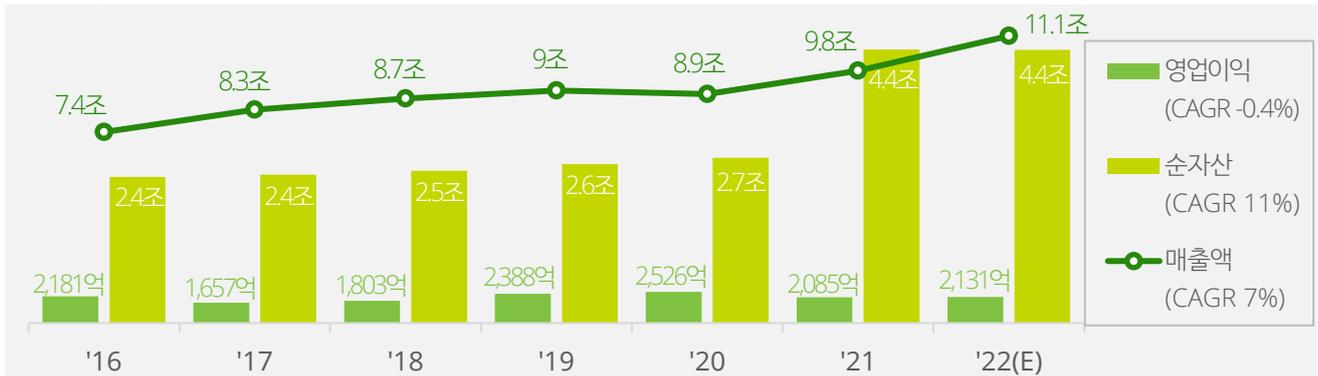
• K사



• S사



• G사



• H사



I. 전문가 기고 1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별첨 1] 지배구조 우수기업(비금융부문)의 주요 재무지표, 계속

□ 2018년

• S사



• P사



• C사



• H사



I. 전문가 기고 2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위기와 기회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

서언

매년 100여개의 회사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으로 이를 공시하는 회사는 20여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공시를 의무화하는 일정을 당국이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ESG정보를 2024년부터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지속가능보고서의 기준이 되는 ISSB의 공시기준이 최근 공개되면서 상당수 기업들이 중요성 판단, 가치사슬(Value Chain) 및 보고기업 범위 등 기준 적용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상당한 실무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등 최근 변화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을 고려하면 투자자 관점에서 이러한 공시정보는 기업의 지속가능여부를 판단할 매우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한 글로벌 기업환경을 살펴보고 왜 이러한 공시기준이 요구되는지 그에 대한 배경과 의미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위기

최근 기후관련 ESG 열풍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기인 지구온난화에 기인한다. 2016년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인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온도상승을 섭씨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협정 목표 이행과 향후 대책을 위해 관련 당사국(Conference of Parties)총회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2021년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총회에서 2022년까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각국은 탄소중립(Net-zero)목표를 2050년으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설정한 기준년도 대비 최소 45% 이상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2021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에서 배출된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로부터의 탄소배출량을 감축 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 (The Climate Group)’은 온실가스 최대배출원인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Renewable Energy 100(RE100)¹⁾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RE100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이니셔티브로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의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390여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하고 있다.

1) RE100 (there100.org) :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어. 재생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의미함

I. 전문가 기고 2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위기와 기회

국내에서도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에 이어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을 선언한 바 있다.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RE100을 달성하고 해당 기업 Value Chain 전 과정상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을 보면 애플, 메타 및 구글의 경우 2030년까지, 아마존은 204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탄소중립(Net-zero)이란 배출한 만큼의 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조달하자는 RE100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RE100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행동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의 관점에서 보면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보다 낮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발전원별 CO₂배출량(톤/GWh)은 1GWh 당 석탄 888톤, 석유 733톤, 천연가스 499톤이며 태양광은 85톤, 원자력은 29톤이라 한다. 구글은 다른 기업과 달리 2030년까지 RE가 아닌 CFE(Carbon Free Energy) 100²⁾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EU 집행위원회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법안이 원전사고와 핵폐기물의 보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더욱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핵연료를 사용하는 조건 등의 까다로운 단서를 부착하여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했다.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고객사인 글로벌 기업의 RE100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RE100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유리하다. 우리는 국토가 좁고 태양광 및 풍력의 여건이 불리하여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대한 공급이 부족할 상황이 조만간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로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Carbon Free 100을 적극적으로 표방하여 유럽 주도의 RE100을 대체할 수 있는 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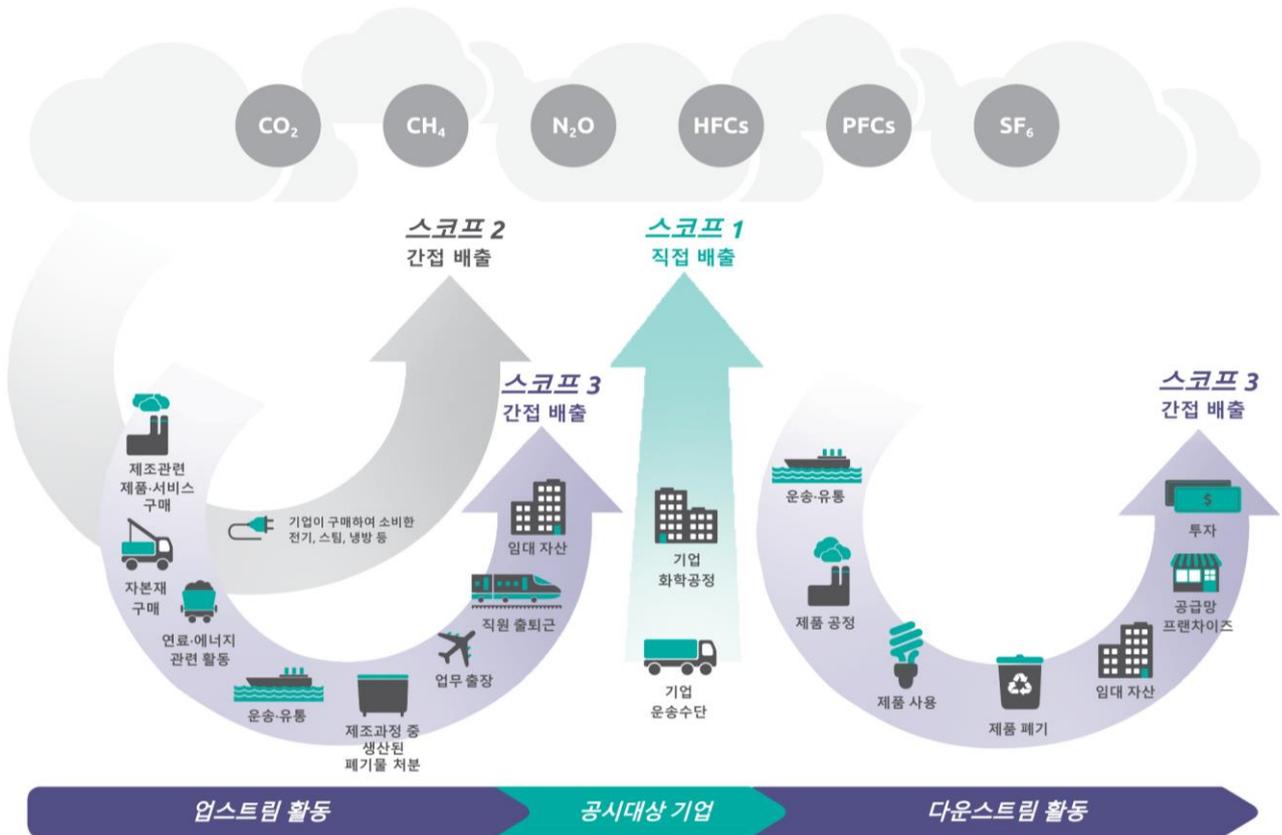
탄소 감축을 위한 첫걸음은 현재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과 관련한 탄소배출은 GHG Protocol에서 정의된 스코프(Scope, 유효범위) 1, 2, 3 (그림 1)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원자력 발전 등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무탄소 전원에서 얻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캠페인. 무탄소 전원 중에서도 재생에너지만 사용해야 하는 RE100과는 차이가 있음

I. 전문가 기고 2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위기와 기회

<그림 1> GHG Protocol에서 정의한 스코프(Scope, 유효범위) 및 기업 가치 사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출처: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11

스코프1은 기업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원에서 발생하여 직접 배출되는 탄소를 운송 수단을 운용하거나 냉장, 냉방 및 제조와 산업 공정에서 방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스코프2는 기업의 소유자산에서 간접적으로 방출된 탄소를 구매하여 소비한 전기 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를 말하며 앞서 언급한 RE100은 스코프2까지만을 포함한다.

스코프3은 스코프2를 제외한 모든 간접적인 탄소 배출로 소재의 생산, 공급사와의 협력 등 기업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급자 중심의 항목들인 업스트림(Upstream)과 제조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수송·유통·판매 및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한 제품을 폐기하는 다운스트림(Downstream)의 기업 가치사슬(Value Chain)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포함한다.

I. 전문가 기고 2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위기와 기회

제조기반이 없는 애플 등 상당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RE100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제품 관련 전체 탄소배출량에서 스코프2까지의 탄소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애플의 경우를 보면 전체에서 스코프2까지의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애플의 사례에서 보듯이 95% 이상의 탄소배출량을 차지하는 스코프3의 온실가스에 대한 측정·관리는 필수적이다. 글로벌 고객들은 협상력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공급망에 RE100 가입을 요구하거나 엄격한 온실가스 측정(Measurement) 및 보고(Reporting)와 더불어 그들이 인정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증(Verification)까지도 요구할 것이다.

스코프3는 범위가 넓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규모와 범위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 중립 목표달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각 기업은 친환경 소재를 발굴하고 공급망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 대응하고 Recycling 등의 기술혁신을 포함하는 기업 생존 관점의 ESG Innovation 전략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

우리의 기회

최근 EU는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발표했다. EU 내 각국들은 이미 인권 및 환경 관련하여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어 인권 및 환경보호와 더불어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동 지침은 EU 시장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 기업에 대하여도 적용 될 예정이며 적용대상 기업의 자회사와 공급 및 하청업체 등의 연계된 업체도 실사 대상에 포함한다. 동 실사지침에는 인권 등과 더불어 탄소배출 관련 측정과 보고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더하여 최근 EU는 탄소배출량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국가로 부터 EU로 유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에 대하여 일종의 무역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잠정합의안을 발표한바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SSA)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환경이라는 명분에 자국산업보호, 경제블록화를 결합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과 준비는 기업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마주할 기후위기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이를 막기 위해서 주어진 선택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하나의 대안밖에 없다.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II. CCG 아젠다 ①

2023년 이사회 아젠다¹⁾

요약

- 2023년 글로벌 이사회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안건과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사이버 공격의 빈도 및 심각성도 부각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감독업무에 대한 이사회 멤버의 관련 전문성 확보가 주요 안건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주제로 전략 및 리스크 감독이 강조되며, 최근 부각되는 주제로는 업무공간 및 인력 문제, 기후변화와 사회 내 기업의 역할에 대한 안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다수 안건 논의 등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이사회의 효율성 확보도 강조되는 안건임

2018년 1월, *On the board's agenda* 초판²⁾은 당해 '관심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5년 후인 현재 시점에서 초판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2023년에 다양한 새로운 주제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부 주제는 세부 사항이 부분적으로 변경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사회 고려대상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2018년 이후에 이사회 안건에 많은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2023년에도 우선순위 항목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새로운 주제는 사회 전반에서 기업의 역할과 관련 있을 것이다. 2019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법인의 목적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the Purpose of the Corporation)³⁾"를 발표하며 해당 주제에 초점이 맞춰진 후, 기업이 직원, 고객, 공급업체 및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와 같은 주주 이외의 단체에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사회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회적 문제로는 기업과 이사회가 공정하고 포용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만든 광범위한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관심을 갖게 만든 많은 사건과 임직원의 건강, 웰빙, 업무 및 업무공간의 기본적인 특성과 같은 문제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 몇 가지 중요한 주제와 2023년에 이사회 안건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델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2023년 1월호

2) Debbie McCormack and Bob Lamm, 「The 2018 boardroom agenda—Dealing with challenges old and new」 Deloitte, January 2018.

3) Business Roundtable, 「Business Roundtable redefines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to promote 'an economy that serves all Americans」 press release, August 19, 2019.

II. CCG 아젠다 ①

2023년 이사회 아젠다

이사회 구성 및 역량

2023년에도 이사회 구성은 2018년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주요 관심 분야이다. 2023년에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FASB(미국회계기준위원회)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문제들은 이사회 구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이버보안은 그런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기업과 이사회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으며, 많은 이사회가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전문 지식부터 일반적인 기술 지식까지 다양한 기술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을 추가적으로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주제는 2022년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안에서 다루어졌는데, 이 제안은 '이사회 구성원 중 사이버보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전문지식의 특성'을 포함하여 사이버보안에 대한 광범위한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부과한다.⁴⁾ 이 제안에 대해 SEC에 제출된 많은 의견은 이사회가 다루어야 하는 모든 주제의 전문가를 추가 영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다른 이사들이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요구사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런 요구사항이 제안대로 채택되거나, 최종 제정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혹은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간에 관계없이, 이사회는 일정 수준의 기술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한 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사회가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다른 영역도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데이터에 따르면 기업들은 더 이상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을 물색하는 데 최고경영자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사람들로 제한하지 않는다.⁵⁾ 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경험있는 이사를 찾는 이사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는 마케팅 경험을 보유한 자를, 인적자본 전략 기회가 있는 회사는 최고인사책임자(CHRO) 등의 역량을 보유한 자를, 국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지정학적 배경을 보유한 자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4)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Cybersecurity risk management, strategy, governance, and incident disclosure」 March 9, 2022.

5) Spencer Stuart, 2022 U.S. Spencer Stuart 2022 Board Index.

II. CCG 아젠다 ①

2023년 이사회 아젠다

기술 및 사이버보안 리스크

5년 전, 기술 리스크에 대한 논의는 인공지능(AI) 사용과 관련된 파괴적 리스크 및 윤리적 문제와 같은 신기술과 관련된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킹'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주요 관심 분야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의 활용과 혼란에 관련된 리스크, 과제 및 기회가 여전히 안건으로 남아 있으나, 논의 주제는 명확하게 사이버보안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사이버 공격의 빈도 및 심각성의 증가와 현재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음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위에서 논의했던 대로, 사이버보안은 이사회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감독업무 수행에 대한 직원 및 외부 자문의 의존도와 이사회에 대한 논의 빈도를 포함하여, 사이버보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이사회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시영역을 크게 확대하도록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제안하기에 충분히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이사회는 리스크, 혁신, 잠재적인 윤리적 영향 및 통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인프라 및 광범위한 기술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SEC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자들은 이사회가 사이버보안 리스크를 해결하고 그 방법을 공시할 것을 계속해서 기대할 것이다.

전략 및 리스크

2018년 이사회 안건에서 일부 주제가 사라지고 새로운 주제들이 떠올랐으나, 전략과 리스크는 어떤 형태로든 이사회 안건 최상위에 있는 영속적인 주제이다. 실제 사례에 의하면 이사회는 회사의 전략을 감독하는 데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이 전략에 대한 연간 논의의 장을 개최했으나 다음 논의의 장까지 전략에 대한 초점이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늘날 이사회는 전략의 일부 측면에 대해 일상적으로 논의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전략구현 프로세스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우리 전략이 실행가능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가?", "전략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조정되거나, 혹은 전략을 포기해야 하는가?", "특정 전략적 목표와 관련된 리스크의 대응방향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가?"

특히 리스크 빈도와 심각성은 나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 리스크 감독은 이사회 안건의 우선순위 항목으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글로벌 팬데믹 리스크,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혼란, 지속적인 경제 문제, 직장내 건강, 복지 및 전반적인 문화적 리스크 등의 인적자본 집중영역을 예상한 기업은 거의 없었다.

II. CCG 아젠다 ①

2023년 이사회 아젠다

아마도 새로운 리스크의 확산으로 인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전사적 리스크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새로운 리스크를 해결하고, 단순히 '확인' 절차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고 싶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 가장 중요한 리스크에 대한 정기적인 데이터 대시보드(dashboard)를 제공하여 감사위원회가 새로운 리스크가 추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특정 리스크의 취약성 및 영향 수준이 분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무공간 및 인력 문제

2020년 9월 초부터 이사회에서 인력 전략이 사업전략만큼이나 중요해지고 있음이 인식되었다.

"팬데믹과 관련된 사건들로 인해 인력 관리는 이사회 안건의 중심이 되었다. 많은 경우에 사업 및 기술 전략에 대한 뒤늦은 고려사항인 인력관리가 이제는 이사회에 다른 주요 중점영역과 동등하게 우선순위가 되었다."⁶⁾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사회가 인력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였으나, 다른 우려사항들도 해당 주제에 이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할 필요성을 강하게 만들었다.

"일부 이사회는 대리인이 고용주에서 노동자로 전환된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인력은 보다 많은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고려한 웰빙, 보다 개인화되고 민첩한 고용 모델 및 경력경로에 중점을 두고 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United State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의하면 2021년 미국에서 4,780만 명이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이는 최소 2001년 이후 노동통계국에서 조사한 수치 중 최대치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총 퇴직률의 69.3%를 차지하며 '대퇴직(the Great Resignation)'이라고 불리었다."⁷⁾

규제 요건에 의해 이사회는 업무공간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다. 2020년 후반에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인적자본 자원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였다.⁸⁾ 그리고 SEC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주제에 대한 더 많은 공시 요구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인이 무엇이든, 이사회는 경영진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었던 회사의 업무공간과 인력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

6) Erica Volini, Steve Hatfield, and Jeff Schwartz, 「The workforce takes center stage: The board's evolving role」 Deloitte, September 2020.

7) Michael Stephan et al., 「Prioritizing human capital—modern challenges and the board's role」 Deloitte, November 2022.

8) SEC, 「Modernization of regulation S-K Items 101, 103, and 105」 August 26, 2020.

II. CCG 아젠다 ①

2023년 이사회 아젠다

기후변화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욱 명백해짐에 따라 투자자(주로 대규모 기관투자자)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종종 탄소배출량 감소 약속을 찾거나 다른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런 압력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기후변화에서 기업의 역할과 그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독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의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다. 그 외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를 보다 광범위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지방(local), 주(state) 및 연방(federal) 정부 모든 수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제가 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까지는 SEC 안건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항은 2020년 말에 각 위원들이 기후변화 공시의 중요성에 대한 연설이나 기타 공시 성명을 발표하고 SEC 관계자들이 기후변화와 사업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사항(경우에 따라 미공시) 조사를 강화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최근인 2022년에 SEC는 온실가스 배출, 이사회 감독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공시를 포함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공시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14,000개 이상의 의견을 기록적으로 수렴했으며, 해당 주제에 대한 최종 규칙을 도입한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이사회가 해당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사회 내 기업의 역할

아마도 최근 몇 년 간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킨 주제는 없을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2019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성명문이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를 촉발시켜 오늘날 기업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에델만 신뢰도 지표조사(Edelman Trust Barometer)에서 발표한 조사결과 중 상위 10개는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 리더십은 이제 비즈니스의 핵심 기능이다", "기업은 불신의 순환을 끊는 데 앞장서야 한다" 등이 꼽혔다.⁹⁾ 일부 기업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거침없이 발언하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했으나,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고객과 직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사회가 경영진과 협력하며 논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이러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어떻게 공개적으로 발언할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의 입장과 관계없이 이사회는 본 주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경영진을 안내해야 한다.

9) Edelman, 「The Trust 10」 from the 2022 Edelman Trust Barometer.

II. CCG 아젠다 ①

2023년 이사회 아젠다



또한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은 위에서 논의된 다른 문제들과 다르게 최근까지 이사회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에게 전무후무한 도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경영진에게 대부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오랫동안 직원 및 인력 문제에 대응해 왔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해 왔다. 예를 들어, 천연 자원 기업들은 자원 고갈을, 악천후나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런 문제를 수년 동안 고심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해야 했다. 한편, 사회적 행동주의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 이사회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그 자체

위에서 논의된 주제는 2023년에 이사회 안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다. 새로운 주제뿐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주제들을 포함하여 논의가능한 주제가 많이 있다. 분명한 것은 이사회는 올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주제를 다룰 것을 요구받을 것이다. 즉, 이사회는 할 일이 많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사회에 소요하는 시간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요 가능한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2023년 이사회 안건의 또 다른 항목은 이사회 효율성 그 자체일 수 있다. 많은 이사회는 무수한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consent agenda¹⁰⁾'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위원회의 역할을 최적화하거나 추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사회 책임은 아마도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사회가 직면한 주제가 줄어들거나 다루기 쉬워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수십 년 동안, 특히 지난 5년 간 이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탄력적(resilient)이고 사전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되돌아본다면, 왜 이런 걱정들을 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10) 회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상적이고 비 논쟁적인 항목들을 한 그룹으로 모아서 한 번의 동의나 투표로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요약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2021년~2022년간 일반상장법인이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¹⁾에 대한 준수율을 파악함
- 2022년 기준, 6개 핵심지표는 준수율 평균이 60% 미만으로 타 지표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 핵심지표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⑧ 집중투표제 채택,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 2022년 기준, 준수율 평균이 85% 이상인 4개 핵심지표는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관련 사항이 회사에서 규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구비된 상황으로 파악됨
 - 핵심지표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2026년까지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되는 바, 해당 기업들은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할 것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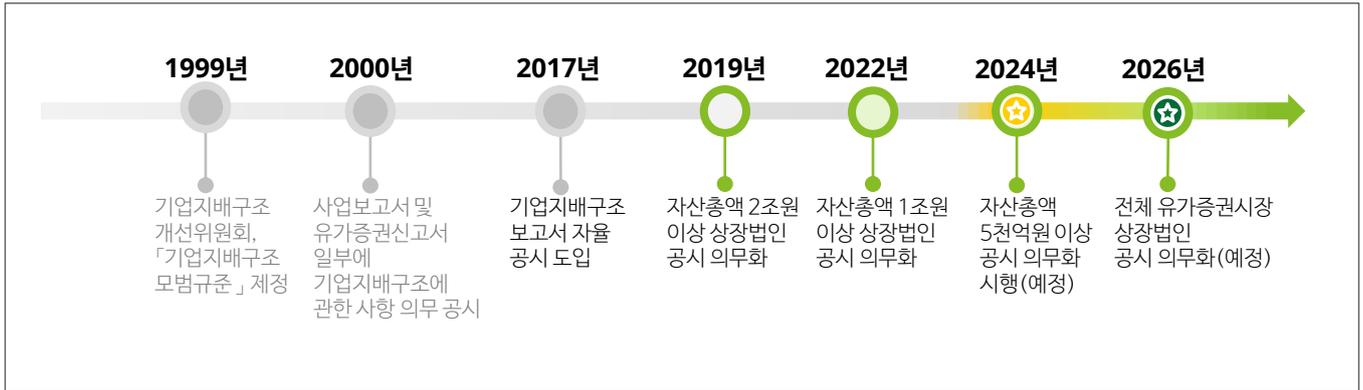
- 한국거래소는 2017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의 운영 현황"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자율공시 항목으로 추가하고,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원칙의 준수여부와 미준수 시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게 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음
 - 동 제도는 자율공시 방식으로 도입되어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으나, 시장 전체에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참여하는 기업들의 평판 제고 효과가 기대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의무공시는 단계적으로 2022년 현재 연결자산(이하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자산 5천억원 이상 및 2026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될 예정임

1)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2022.03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그림 1>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자산규모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일정



- 본 섹션에서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실시가 장려되는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에 대한 준수율을 파악하여 개괄적인 지배구조 현황 파악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일반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2021년~2022년 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일반상장법인의 핵심지표 준수 현황 요약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표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2)

구분	핵심지표	2021년 준수비율		2022년 준수비율					
		자산 2조 이상 (n=173)	소계	소계	자산 2조 이상 (n=194)	자산 1조 ~2조 (n=104)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29.5%	51사	26.5%	79사	35.6%	69사	9.6%	10사
	② 전자투표 실시	71.7%	124사	75.2%	224사	80.4%	156사	65.4%	68사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63.6%	110사	67.8%	202사	74.7%	145사	54.8%	57사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47.4%	82사	47.3%	141사	54.6%	106사	33.7%	35사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43.4%	75사	34.6%	103사	44.3%	86사	16.3%	17사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88.4%	153사	74.2%	221사	83.5%	162사	56.7%	59사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29.5%	51사	22.1%	66사	27.8%	54사	11.5%	12사
	⑧ 집중투표제 채택	5.2%	9사	3.7%	11사	5.2%	10사	1.0%	1사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70.5%	122사	63.4%	189사	71.6%	139사	48.1%	50사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3.1%	161사	99.0%	295사	99.5%	193사	98.1%	102사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97.1%	168사	89.9%	268사	97.4%	189사	76.0%	79사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54.3%	94사	51.0%	152사	52.6%	102사	48.1%	50사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94.8%	164사	92.3%	275사	96.9%	188사	83.7%	87사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의 회의 개최	79.8%	138사	60.7%	181사	75.3%	146사	33.7%	35사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100%	173사	98.7%	294사	100.0%	194사	96.2%	100사
준수비율 평균		64.5%		60.4%		66.6%		48.8%	

2)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 총 조사대상 회사: 2021년도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원 이상 298사, 2020년도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원 이상 173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 2022년 자산(연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66.6%이며 전기대비 2.1%p 상승함
- 2022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48.8%로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준수율과는 17.8p%의 격차가 존재함
- 2022년 기준 6개 핵심지표는 준수율 평균이 60% 미만으로 타 지표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보임
 - 핵심지표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26.5%)
 - 상법 제363조 상 의무기간(2주)만을 소폭 상회하는 선에서 공시하고 있음
 - 핵심지표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47.3%)
 - 일반상장법인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의 공시 준수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핵심지표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34.6%)
 - 일반상장법인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과 관련한 준수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임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준수 요건의 강화: 상법상 대표이사 선임절차의 준수 여부를 넘어 후보의 구성 또는 선정을 위한 기준·교육·평가·정기적 개선보완 등이 실제 이행되는 경우에만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여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지표 준수를 인정
 - 핵심지표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22.1%)
 - 지배구조 모범규준상 기업지배구조 정립 차원에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가 권고되는데,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임
 - 핵심지표 ⑧ 집중투표제 채택 (3.7%)
 - 15개 핵심지표 준수율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내 일반상장법인이 이사회 구성에 있어 소액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는데 수동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핵심지표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51.0%)
 -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독립성' 문구 개정으로 인해 준수율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
 -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는 부서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 평가 및 이동 등 사안에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여 경영진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함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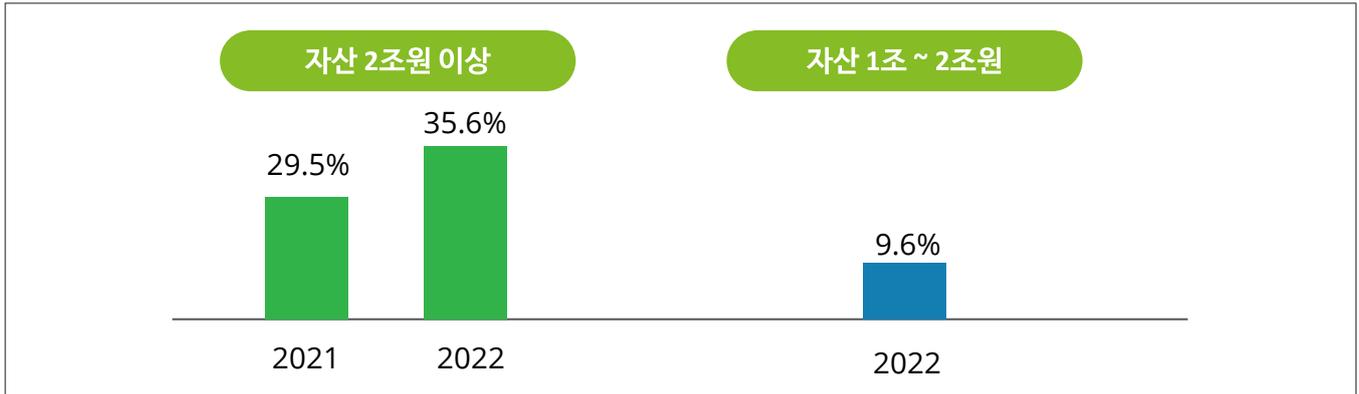
- 2022년 기준 하기의 4개 핵심지표는 준수율 평균이 85% 이상으로 타 지표 대비 우수한 수준임
- 핵심지표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9.0%)
 - '6년 초과 장기재직(계열회사 포함 9년) 사외이사 부존재' 사항은 법제화 되어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준수율은 100% 수준임
 - 핵심지표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89.9%)
 -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시사함
 - 핵심지표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92.3%)
 - 상법(제542조의11)상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에는 1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는 동법을 적용받지 않음
 - 핵심지표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98.7%)
 - 내부감사기구의 정보접근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회사에 관련 규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해됨
 - 상법상 (제412조)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음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그림 2>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상법 제363조 상 의무기간(2주)만을 충족하는 선에서 공시하는 것으로 이해됨
- 2022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35.6%가 주총 4주 전에 통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1%p 증가함
- 2022년 기준,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주총 4주 전 통지는 9.6%로 미흡한 수준임

<표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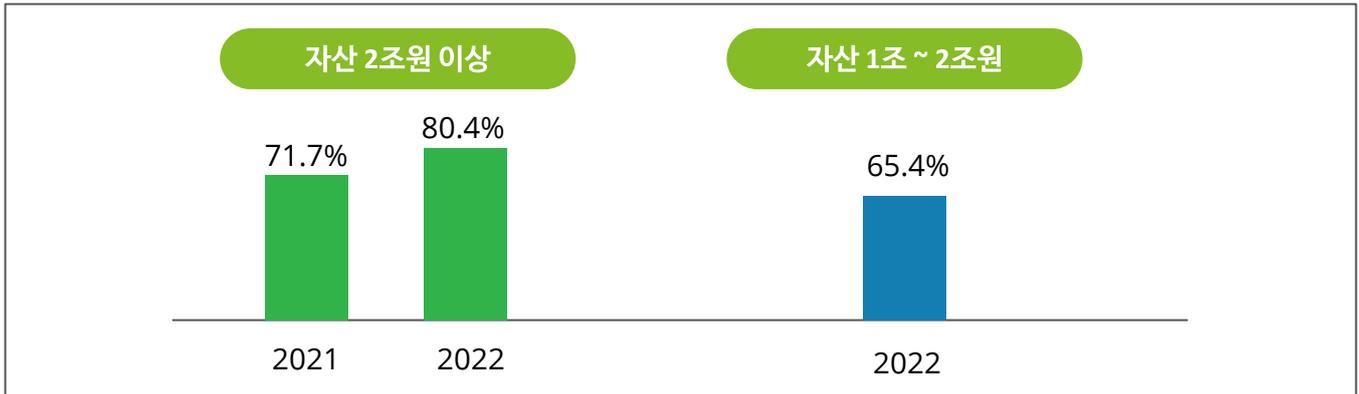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원칙 1- 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주주총회 4주전 통지)에 주주에게 제공하였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② 전자투표 실시

<그림 3>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② 전자투표 실시



- 상법상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 (제368조의4)
 - 2020년 개정상법은 전자투표 실시로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기업에 한해 감사 등 선임 시 결의요건을 완화함
- 2022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80.4%가 전자투표를 도입 하였으며, 전기대비 8.7%p 상승하여 적극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실시중임
- 2022년 기준,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65.4%가 전자투표를 도입함

<표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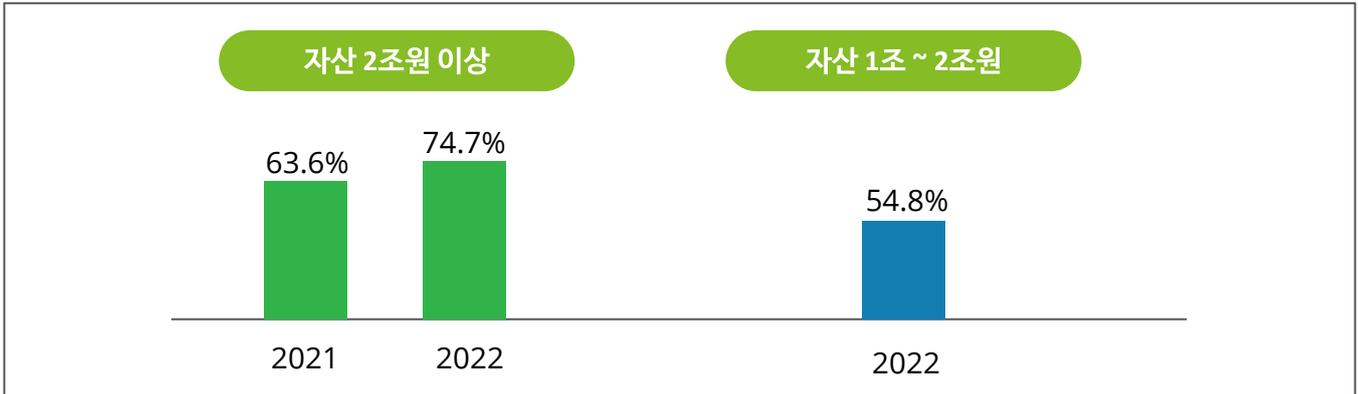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원칙 1- 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ii)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그림 4>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2022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74.7%가 집중일 이외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전기대비 11.1%p 증가하여 개선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2022년 기준,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54.8%가 집중일 이외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음
- 주주총회 집중일은 매년 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의미하며, 주총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

<표 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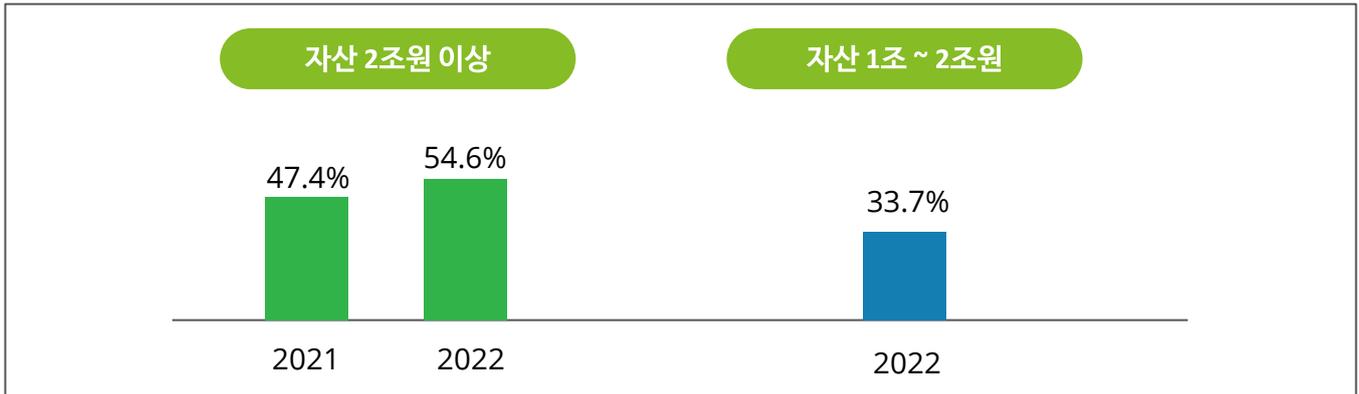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원칙 1- 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i)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는지 여부 등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그림 5>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일반상장법인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의 공시 준수에 수동적인 면을 보이고 있음
- 2022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54.6%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전기대비 7.2%p 증가함
- 2022년 기준,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33.7%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음
- 배당정책은 단순히 당기의 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실행기준-방향을 의미하며, 배당실시 계획은 당기의 배당실시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배당 결정 공시 등을 통해서도 이행 가능함

<표 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 -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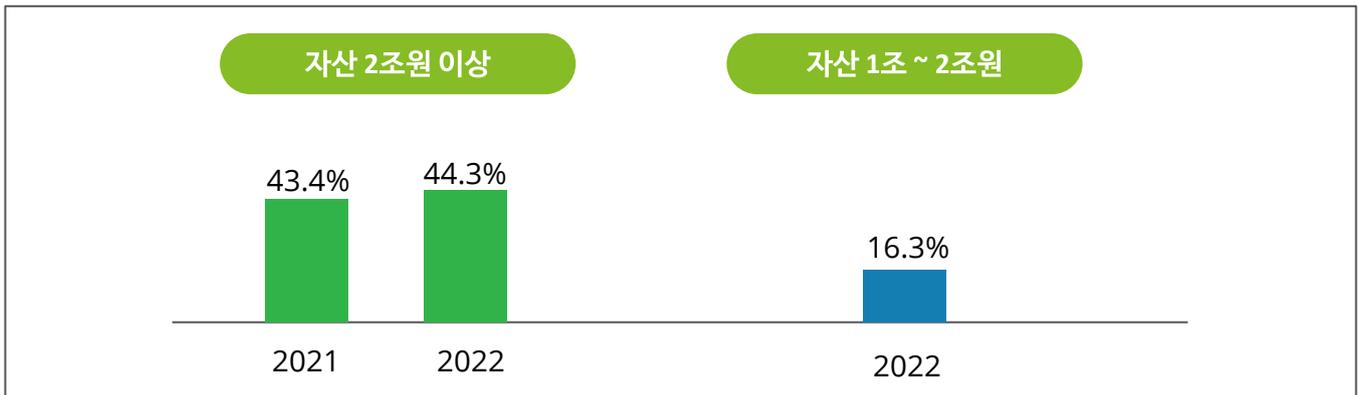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원칙 1 - 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가.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i)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 (ii) 주주환원정책 등을 주주에게 안내하는 방식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그림 6>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전체 일반상장법인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과 관련한 준수율 및 개선 추이는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임
- 2022년 기준, 자산 200억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44.3%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전기대비 0.9%p 증가함
- 2022년 기준, 자산 100억 이상 200억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16.3%만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운영중에 있음

<표 6>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세부원칙 3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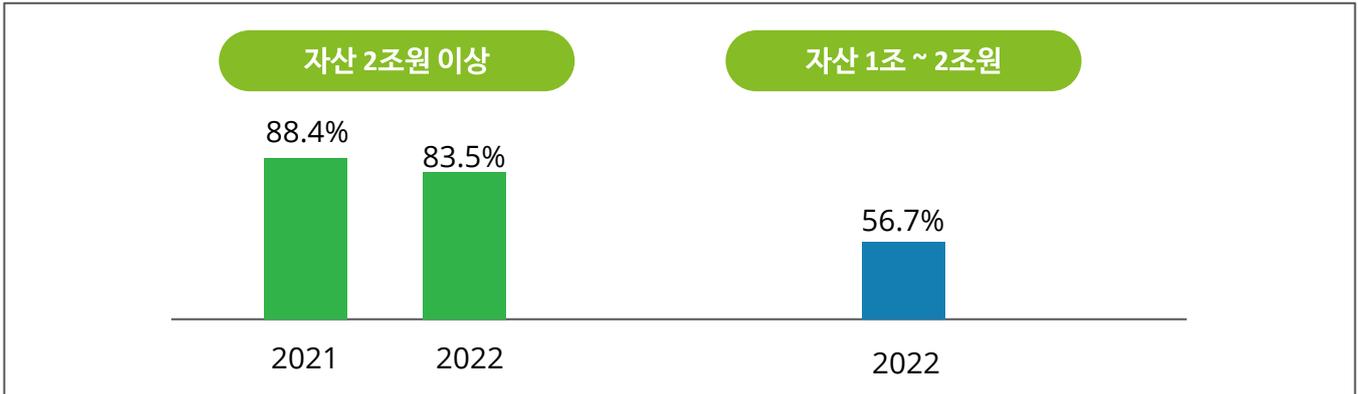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세부원칙 3 - 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과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i)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 (ii) 후보(집단)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 (iii) 공시대상기간동안 교육 현황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그림 7>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상 체계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어 준수율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임³⁾
 - 이사회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 권고됨 (지배구조 모범규준 II.1.5)
- 2022년 기준, 자산 200억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83.5%가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전기대비 4.9%p 감소함
- 2022년 기준, 자산 100억 이상 200억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56.7%가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고 운영중에 있음

<표 7>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세부원칙 3 - ③)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세부원칙 3 - 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가. 내부통제정책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i) 리스크의 인식, 관리 등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 (ii)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 (iii)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 및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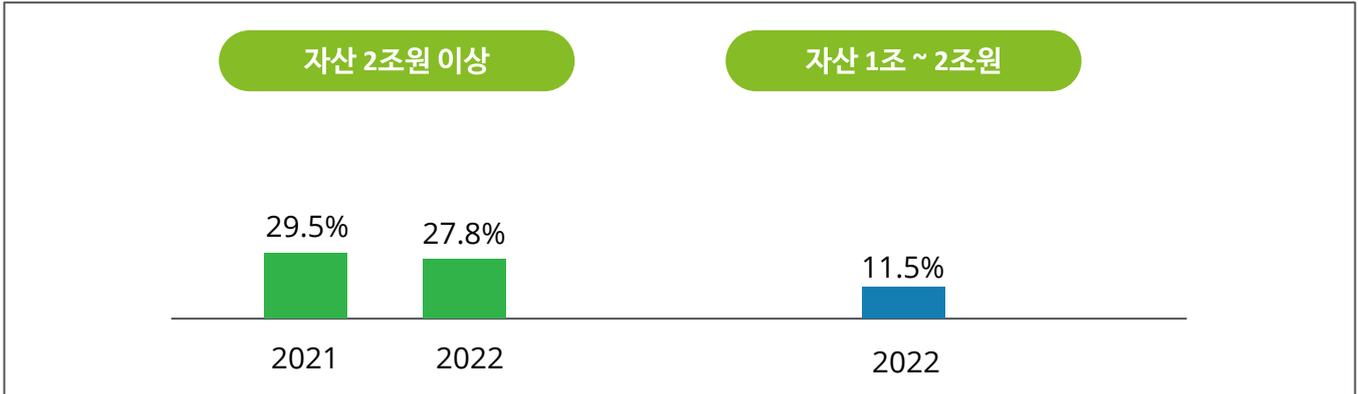
3) 내부통제정책에 내부회계관리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공시정보관리 등의 정책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주로 리스크관리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주요 미준수 사유였음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그림 8>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 정립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가 권고됨 (지배구조 모범규준 II.5.1)
 -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조하거나 사업 전략에 보조를 맞춰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췄는지 파악이 용이함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임사외이사의 선임을 권고하고 있는데, 선임 사외이사는 의장과 별도로 사외이사 회의 소집 권한을 갖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수행함
- 2022년 기준, 자산 200억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27.8%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를 적용중이며, 전기대비 1.7%p 감소함
- 2022년 기준, 자산 100억 이상 200억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11.5%만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를 적용중임

<표 8>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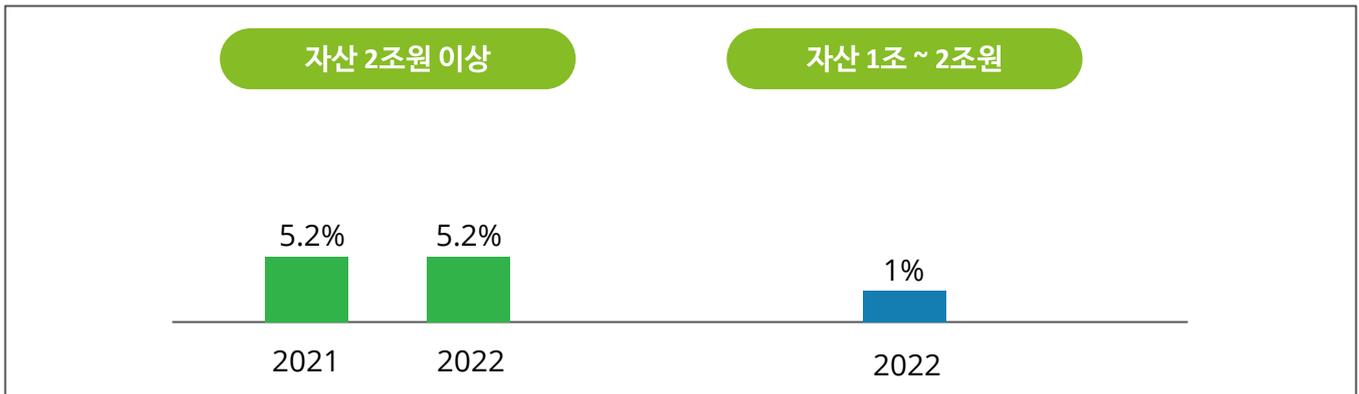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4 -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v)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여부, 미분리 시 선임(先任)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는지 여부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⑧ 집중투표제 채택

<그림 9>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⑧ 집중투표제 채택



- '집중투표제⁴⁾ 채택'은 15개 핵심지표 준수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2022년 기준, 자산 200억 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5.2%가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기대비 동일한 수준임
- 2022년 기준, 자산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1%만이 집중투표제를 채택중임

<표 9>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 - ③)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4 - 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기재하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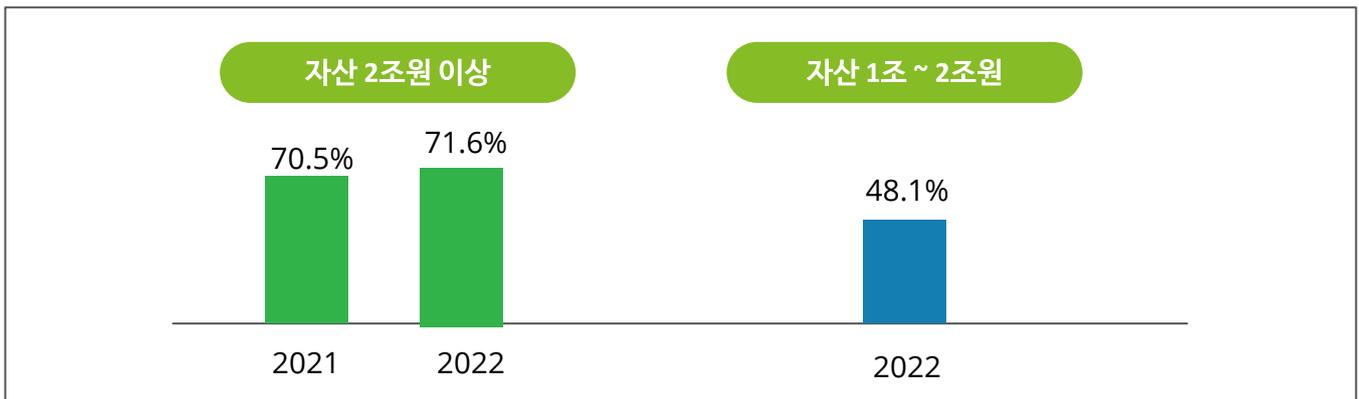
4) 상법 제382조의2.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대주주의 권력을 견제하고 소액주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상존함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그림 10>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2022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71.6%가 기업가치 훼손과 관련한 임원 선임 방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대비 1.1%p 상승함
- 2022년 기준,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48.1%가 기업가치 훼손과 관련한 임원 선임 방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 예시: 법규위반으로 법령상 결격사유에 준하는 행정·사업적 제재를 받은 경우, 자기거래 등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등 (지배구조 모범규준 II.3.3)

<표 1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 -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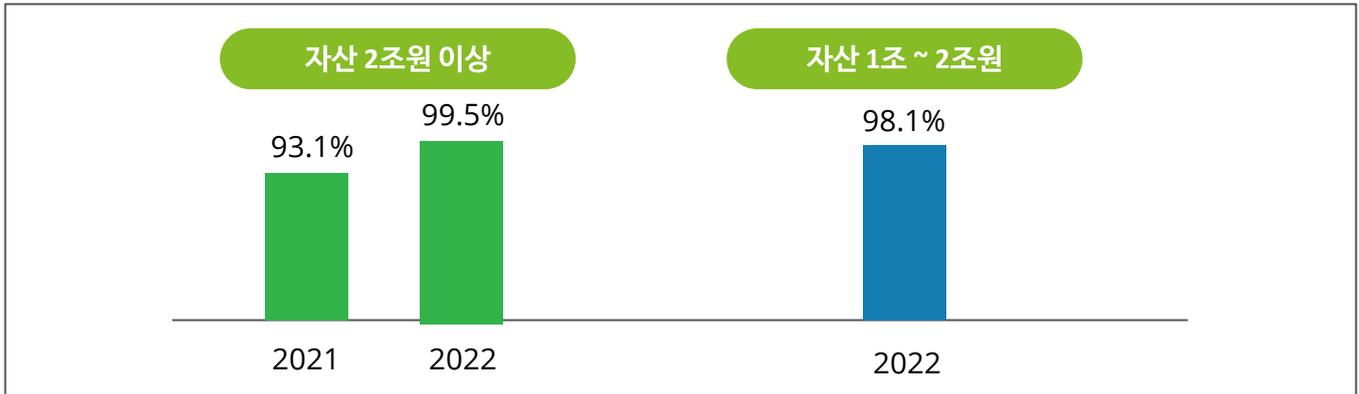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4 - 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 나.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다.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현황을 설명한다. 만일 선임되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는 경우 특정인의 성명 등은 기재 생략)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그림 11>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6년 초과 장기재직(계열회사 포함 9년) 사외이사 부존재' 사항은 법제화 되었음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 미준수의 경우 시행령 개정 전 선임하였거나 회사 운영 상 후임자 선임을 위한 직위를 유지한 예외적 사례였음
- 2021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99.5%는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가 부재하며 전기대비 6.4%p 상승함
- 2021년 기준,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98.1%는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가 부재함

<표 1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 (세부원칙 5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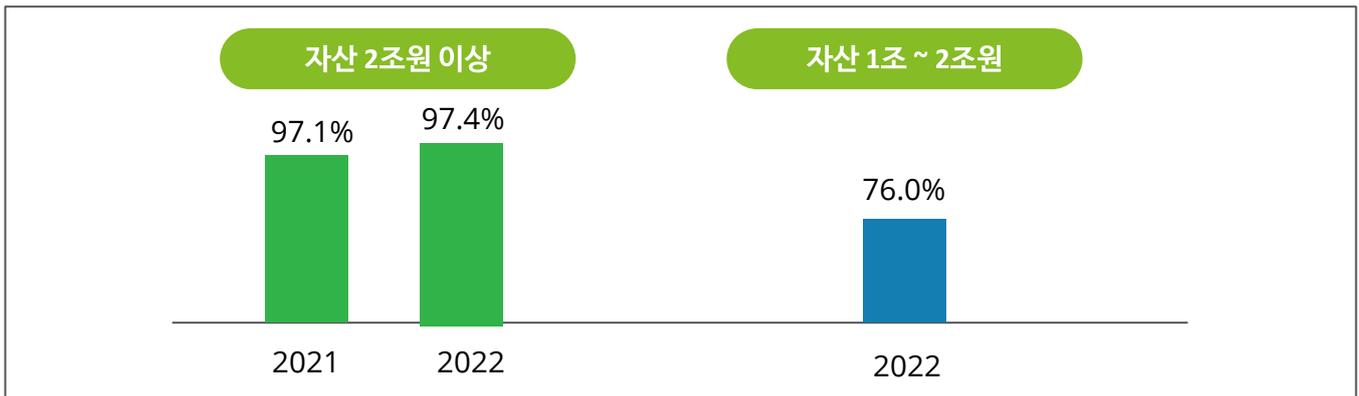
-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원칙 5 - 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각각의 재직기간(0년 0월)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 하고 있는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한다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그림 12>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와 감사)에 대한 교육 실시가 권고됨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I.5.1)
- 2022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97.4%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제공중이며 전기대비 0.3%p 상승함
- 2022년 기준,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76.0%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제공중임

<표1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세부원칙 9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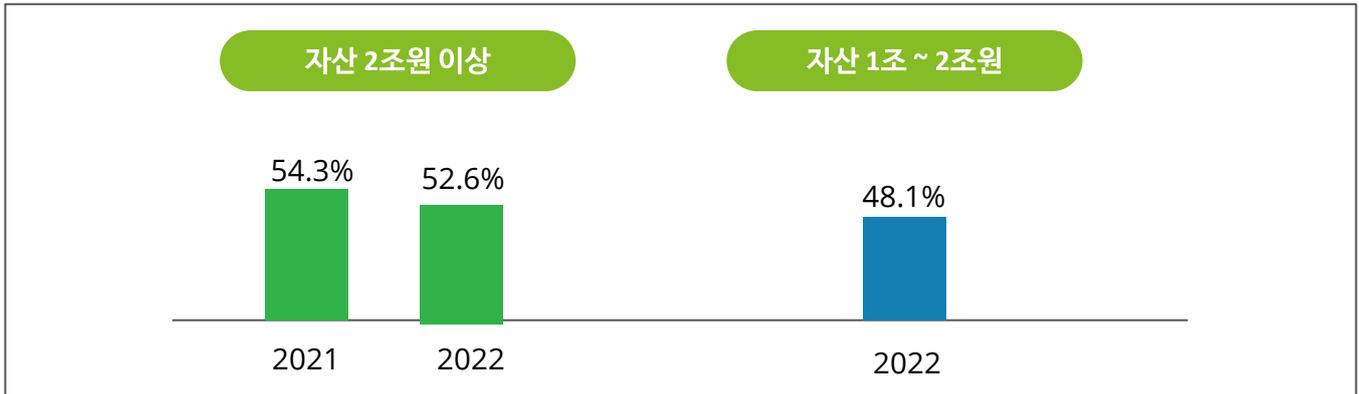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9 - 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ii)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면 또는 화상 교육 제공현황(공시대상 기간중 교육시간, 교육내용, 내부회계관리 규정상 교육계획 이행여부 등)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그림 13>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본 지표에 대해 체감하는 준수 기준이 높아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이해되며 효과적인 내부통제정책 운영 및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권고되며 관련 정책 실행의 기반 마련을 위한 환경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임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 확보 권장 (지배구조 모범규준 IV.1.4)
- 2022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52.6%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전기대비 1.7%p 하락함
- 2022년 기준,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48.1%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고 있음

<표 1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세부원칙 9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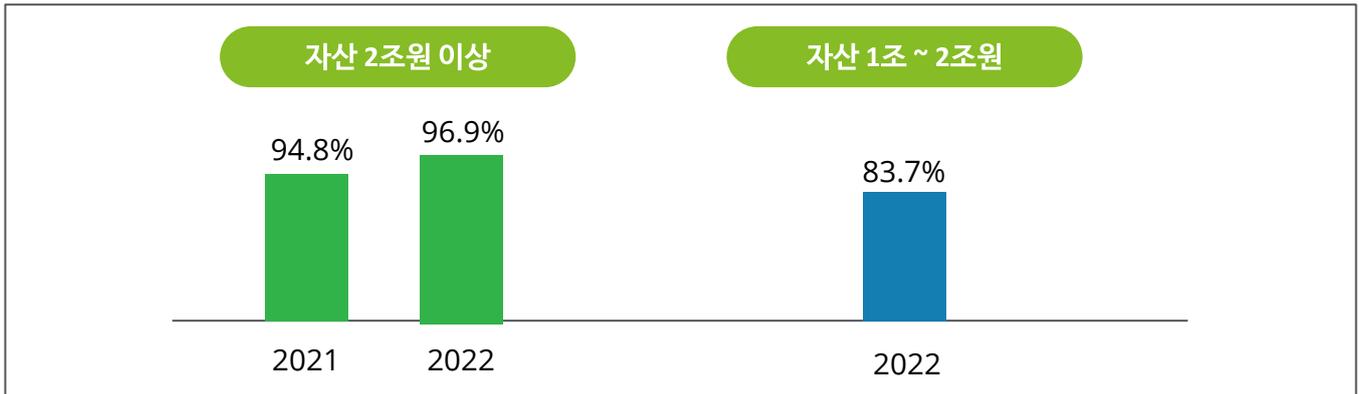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9 - 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iv)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조직,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책임자 직급, 인원, 역할, 구성원의 전문성,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보고 체계 등)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그림 14>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2022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96.9%는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존재하며 전기대비 2.1%p 상승함
 - 미준수 6개 기업의 연결자산 규모는 2조원 이상이지만 개별자산 규모는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포함 사유가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됨
 -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요건은 상법시행령에서 제시함 (제37조 제2항)
- 2022년 기준,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84.7%는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존재한다고 기재함

<표1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세부원칙 9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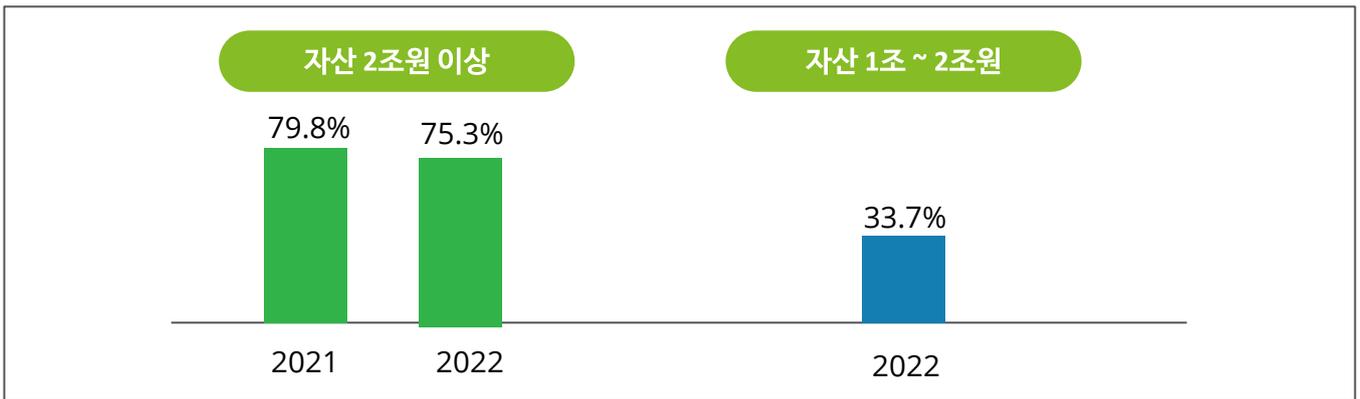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9 - 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가.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i) 내부감사기구 구성·선임 현황, 회계·재무 또는 감사전문가 현황(관련 경력·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그림 15>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준수율이 미흡한 수준으로 이해됨
-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식적인 회의와는 별도로 외부감사인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할 것이 권고됨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V.2.1)
- 2022년 기준, 자산 200억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75.3%는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한다고 기재하였으며 전기대비 4.5%p 하락함
 - 서면보고를 제외한 대면 또는 화상회의에 한해 준수여부 판단기준이 강화된 바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2022년 기준, 자산 100억 이상 200억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33.7%는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한다고 기재하였음

<표 1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세부원칙 10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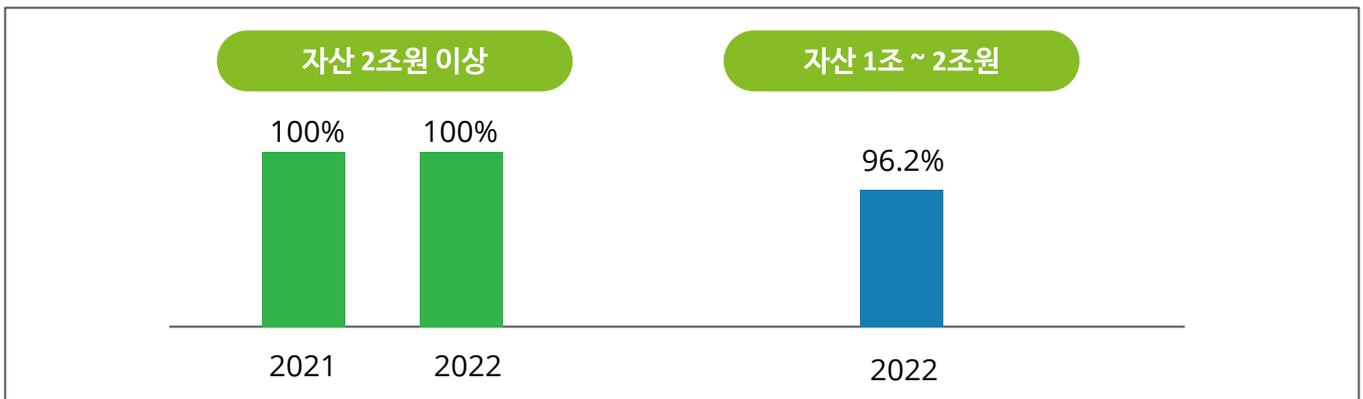
-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세부원칙 10 - 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실태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i)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대면 또는 화상 회의)하는지 여부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그림 16>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함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I.2.7)
- 2022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100%는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으며 전기대비 동일한 수준임
- 2022년 기준,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96.2%는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기재함
 - 미준수 사례의 경우 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없거나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실행한 적이 없어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함

<표 16>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세부원칙 9 - ①)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9 - 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v) 기업이 보유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정도

II. CCG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결언

- 이상과 같이 2021년~2022년 간 일반상장법인이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방식으로 일반상장법인이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15개 핵심지표 준수율을 파악하였음
 - 거버넌스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음
- 2024년부터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대상이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6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전체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인들은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할 것임

III. 데이터 포인트 ①

국내 상장법인 이사회 다양성 확보 - 여성 사외이사 비중 추이를 중심으로

요약

- 국내외로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2021년~2022년 여성 사외이사 비중을 조사해보고 이사회 다양성 확보의 의의를 고찰하고자 함
- 2022년 기준 전기대비 점진적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동향으로 보임
- 향후 이사회 다양성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사회 내 여성 사외이사의 비중 증감에 초점을 두기 보다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배경

-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란 연령, 성별, 출신, 국적, 전공, 학력, 경험, 경력, 성향 등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자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국내외로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2년 8월 부터 시행되고 있음 (제165조의20)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만 구성하지 않아야 함
 - 미국의 경우 Regulation S-K에서 기업의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다양성 정책과 그 평가에 관해 공시하는 정책을 시행중임
 - 최근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성별 균형 개선에 관한 지침¹⁾에 잠정적으로 합의함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중 최소 40%, 전체 이사 중 최소 33%는 과소 대표되는 성별이어야 함을 명시함
- 본고에서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2021년~2022년 여성 사외이사 비중을 조사해보고 이사회 다양성 확보의 의의를 고찰하고자 함

1) European Organization of Military Associations and Trade Unions (EUROMIL),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the gender balance among non-executive directors of companies listed on stock exchanges and related measures」, 2022

III. 데이터 포인트 ①

국내 상장법인 이사회 다양성 확보 - 여성 사외이사 비중 추이를 중심으로

상장법인 여성 사외이사 비중 추이

- 2022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여성 사외이사의 비중은 10.6%로 전기대비 2.9%p 상승함
 - 2022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19.4%로 전기대비 5.3%p 상승함
 -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영향이 큼 (제165조의20):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에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로만 구성되어서는 안 됨
 - 2022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자산 2조 미만 상장법인의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4.9%로 전기대비 1.2%p 상승함
 - 한편, 글로벌 이사회 여성 임원 비중 평균은 19.7%이고 한국은 4.2%로 글로벌 72개 국 중 69위임²⁾

<그림 1> 2021년-2022년 유가증권시장 여성 사외이사 비중 추이³⁾

구분	2021			2022			전기대비
	성별	사외이사 수 (명)	비중	성별	사외이사 수 (명)	비중	
유가증권시장	남	1,966	92.3%	남	1,873	89.4%	▼2.9%p
	여	163	7.7%	여	221	10.6%	▲2.9%p
	소계	2,129	100.0%	소계	2,094	100.0%	
자산 2조원 이상	남	692	85.9%	남	656	80.6%	▼5.3%p
	여	114	14.1%	여	158	19.4%	▲5.3%p
	소계	806	100.0%	소계	814	100.0%	
자산 2조원 미만	남	1,274	96.3%	남	1,217	95.1%	▼1.2%p
	여	49	3.7%	여	63	4.9%	▲1.2%p
	소계	1,323	100.0%	소계	1,280	100.0%	

2) 딜로이트 글로벌, 「Women in the boardroom」, 2022.02

3)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783사 및 2022년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779사의 사외이사를 조사대상으로 함

III. 데이터 포인트 ①

국내 상장법인 이사회 다양성 확보 - 여성 사외이사 비중 추이를 중심으로

- 2022년 기준 코스닥시장 여성 사외이사의 비중은 4.8%로 전기대비 0.7%p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 여성 사외이사 비중(10.6%) 대비 5.8%p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법적으로 여성 사외이사 선임이 요구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보다는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임
 - 2022년 기준 코스닥시장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11.8%로 전기대비 4.0%p 하락함
 - 2022년 기준 코스닥시장 자산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4.7%로 전기대비 0.7%p 상승함

<그림 1> 2021년-2022년 코스닥시장 여성 사외이사 비중 추이 ⁴⁾

구분	2021			2022			
	성별	사외이사 수 (명)	비중	성별	사외이사 수 (명)	비중	전기대비
코스닥시장	남	2,265	95.9%	남	2,306	95.2%	▼0.7%p
	여	96	4.1%	여	115	4.8%	▲0.7%p
	소계	2,361	100.0%	소계	2,421	100.0%	
자산 2조원 이상	남	16	84.2%	남	30	88.2%	▲4.0%p
	여	3	15.8%	여	4	11.8%	▼4.0%p
	소계	19	100.0%	소계	34	100.0%	
자산 2조원 미만	남	2,249	96.0%	남	2,276	95.3%	▼0.7%p
	여	93	4.0%	여	111	4.7%	▲0.7%p
	소계	2,342	100.0%	소계	2,387	100.0%	

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388사 및 2022년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1,433사의 사외이사를 조사대상으로 함

III. 데이터 포인트 ①

국내 상장법인 이사회 다양성 확보 - 여성 사외이사 비중 추이를 중심으로

결언

- 2022년 기준, 전기대비 점진적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의미 있으나, 여성의 사회진출 확산을 고려할 때, 여성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과 같은 의사결정 직으로의 진출은 미흡한 수준임
 - 관련한 현황 개선에 대한 인식 전환과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임
- 더불어, 이사회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내 여성 사외이사의 비중 증감에 연연하기 보다 이사회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 이사회 내 여성 사외이사의 권한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의 확대 고려
 - 이사회 의장, 이사회 산하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등을 적극 고려
 - 정기적인 여성 사외이사 선임 계획과 실행 방법에 대한 공시가 바람직함

III. 데이터 포인트 2

2023년 글로벌 감사위원회 서베이로 살펴보는 지배기구의 당면과제

요약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오늘날 감사위원회는 사이버보안, 전사적 리스크 관리,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등과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리스크 영역의 감독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며, 동시에 효과성 제고 목적으로 이사회 내 다양성 강화에의 요구 또한 받고 있음
- 감사위원회가 변화하는 책임과 주요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Deloitte Global과 Center for Audit Quality(CAQ)에서 2023년 서베이를 진행함
- 본고에서는 Deloitte Global 및 CAQ 보고서¹⁾의 서베이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지배기구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당면과제를 요약하여 제시함

논의배경

- 빠르게 변화하는 리스크 환경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감독 범위는 확대되는 추세이며 오늘날의 감사위원회는 사이버보안, 전사적 리스크 관리,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등과 같이 새롭게 부상하고 심화되는 리스크 영역의 감독 책임을 부여받고 있음
 - 또한, 이사회는 변화하는 책임과 주요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측면에서 다양성 강화를 요구받고 있음
- 감사위원회가 변화하는 책임과 주요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Deloitte Global과 Center for Audit Quality(CAQ)에서 2023년 서베이를 진행함
 - 본고에서는 Deloitte Global 및 CAQ 보고서의 서베이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지배기구(이사회, 감사위원회)의 당면과제를 요약하여 제시함

감사위원회 구성: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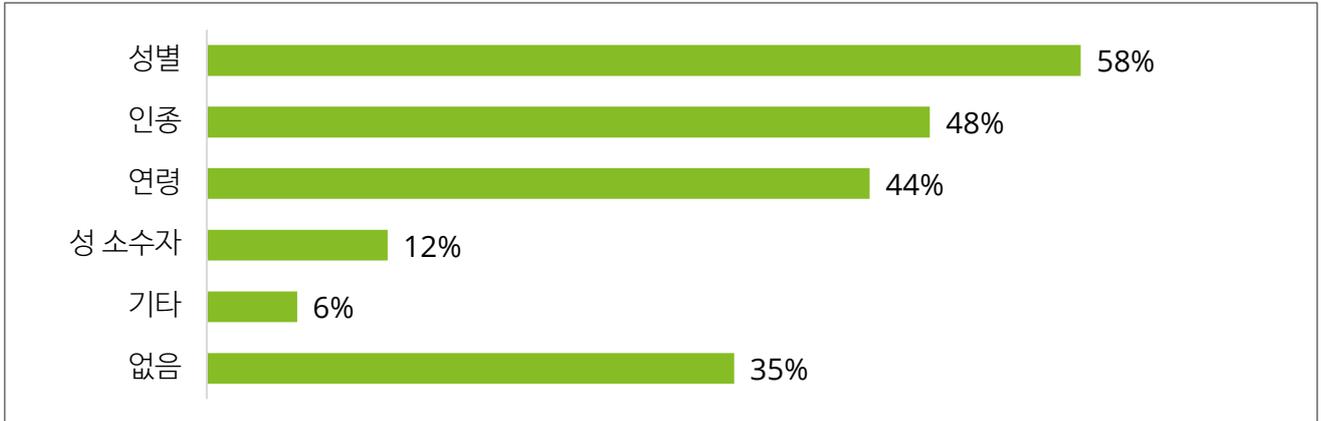
- 응답자의 소속 감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다양성 특성은 성별(58%)로 나타났고, 인종(48%), 연령(44%), 성소수자(12%), 기타(6%)가 순서대로 그 뒤를 이었음
 - 소속 감사위원회에서 다양성을 중요하지 않는다는 답변 또한 35%를 차지함

1) Deloitte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Priorities and Committee Composition」, 2023. 2022.8.24~10.14에 조사된 대규모 미국 기반 상장사(응답자의 80% 이상이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상장사 소속) 감사위원 164명 대상

III. 데이터 포인트 ②

2023년 글로벌 감사위원회 서베이를 살펴보는 지배기구의 당면과제

<표 1> 감사위원회 내에서 중요시하는 다양성 특성 응답 결과



- 이사회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 다양성이 강조되는 추세임 ²⁾
 - 미국 나스닥의 이사회 다양성 관련 규정(2021년 8월 SEC 승인)은 상장사에 이사회 구성원 중 1명 이상은 여성으로 선임, 1명 이상은 소수인종 또는 성소수자를 선임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comply or explain 원칙)
 - 영국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은 2021년 7월, 상장사 이사회 구성원의 40%를 여성으로 선임하고, 최소 1명의 소수인종을 포함하는 규칙을 발표함 ³⁾
 - 영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 구성상 성별, 사회적 및 인종적 배경, 인지적 및 개인적 강점 등의 다양성 촉진을 강조함
- 국내에서도 2022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못하게 명문화하고 있음 ⁴⁾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도 지식·경험·능력·성별의 다양성을 충족하게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함

2)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 자체 기술함

3) 블랙록, 뱅가드 등의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30%의 여성 이사진 확보를 권고하는 것을 고려하면 과감한 조치라는 반응이 있었으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에 기반을 둔 권고 규정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준수하거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명하러(comply or explain)는 원칙에 기반함

4)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 자체 기술함

III. 데이터 포인트 2

2023년 글로벌 감사위원회 서베어로 살펴보는 지배기구의 당면과제

<표 2> 이사회 다양성 관련 국내 법규

구분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배구조 모범규준	2.3.5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이사회 다양성 이사회는 그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식·경험·능력·성별을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충족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회 내 다양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고 효과적인 토론을 거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 이사회 수준에서 다양성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위원회 수준에서의 다양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많은 연구에서 다양성을 지닌 팀이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짐⁵⁾

감사위원회의 주요 안건

- 감사위원회 안건 중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 외에 향후 12개월 동안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은 '사이버보안(63%)', '전사 리스크 관리(45%)' 및 'ESG 공시 및 보고(39%)'로 작년 서베이 결과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남

<표 3> 2023년 감사위원회 예상 주요 안건(재무보고 및 내부통제 제외) 응답 결과

구분	내용	비율
1	사이버보안	63%
2	전사 리스크 관리	45%
3	ESG 공시 및 보고	39%
4	인플레이션 리스크	26%
5	부정 리스크	20%

5) Beilock, Sian. 「How Diverse Teams Produce Better Outcomes」 Forbes, 2019.04

III. 데이터 포인트 2

2023년 글로벌 감사위원회 서베이로 살펴보는 지배기구의 당면과제

<표 4> 2022년 감사위원회 예상 주요 안건(재무보고 및 내부통제 포함) 서베이 결과

구분	내용	비율
1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	80%
2	사이버보안	62%
3	전사 리스크 관리의 효과성	35%
4	ESG 보고	25%
5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22%
6	부정 리스크	18%

1) 사이버보안

- SEC에서 "사이버보안 사고 및 사이버보안 위협 관리, 전략 및 거버넌스"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규칙을 발표하는 등 사이버보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사이버보안은 감사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대두됨
- 사이버보안의 감독 책임의 주체는 금융사의 경우 감사위원회(38%), 이사회(29%), 리스크위원회(24%) 순으로 나타났고, 비금융사의 경우 감사위원회(59%), 이사회(25%), 리스크위원회(5%) 순으로 나타남
 - 금융사의 경우 리스크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이므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보다 사이버보안을 감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주목할 결과임

<표 5> 사이버보안 감독 책임의 주체 응답 결과

구분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상/인사위원회	거버넌스/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위원회	기타	없음/모름
전체	26%	53%	1%	1%	11%	6%	2%
금융사	29%	38%	0%	0%	24%	9%	0%
비금융사	25%	59%	1%	2%	5%	4%	4%

- 응답자의 41%는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사이버보안에 대한 적절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는 작년 서베이 결과보다 6%p 증가한 것임
- 응답자의 43%는 지난 1년간 사이버보안 영역의 외부전문가와 교류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외부 관점 획득을 위해 경영진 배석없이 전문가와 교류한 영역으로는 사이버보안이 재무·회계 다음으로 상위 두 번째 영역으로 선정됨

III. 데이터 포인트 ②

2023년 글로벌 감사위원회 서베이를 살펴보는 지배기구의 당면과제

- 작년에는 경영진 배석없이 전문가와 교류한 영역으로 사이버보안(38%)이 1위를 차지하였고, 재무·회계(27%)가 그 뒤를 이었음

2) 전사 리스크 관리

- 조직 내 전사 리스크 관리 감독 책임의 주체는 감사위원회(43%), 이사회(28%), 리스크위원회(21%) 순으로 조사됨
 - 금융사의 경우 리스크위원회(51%)가 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표 6〉 전사 리스크 관리 감독 책임의 주체 응답 결과

구분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상/인사위원회	거버넌스/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위원회	기타	없음/모름
전체	28%	43%	1%	2%	21%	2%	3%
금융사	22%	27%	0%	0%	51%	0%	0%
비금융사	31%	51%	1%	3%	8%	3%	4%

- 응답자의 75%는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기업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있다고 응답함
 - 감사위원회의 리스크 감독 역량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신뢰를 나타냄
- 응답자의 17%는 지난 1년간 전사 리스크 관리 영역의 외부전문가와 경영진 배석없이 교류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함

3) ESG 공시 및 보고

- ESG 공시 및 보고의 감독 책임의 주체는 감사위원회(34%), 이사회(27%), 거버넌스/임원후보추천위원회(24%) 순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작년에 응답자의 10%만이 감사위원회로 꼽은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임
 - 이는 ESG 공시 및 보고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의 관심 증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SEC는 2022년 3월 상장사의 기후변화 리스크 및 관련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규칙을 제안하였음
- 응답자의 32%는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ESG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있다고 응답함

III. 데이터 포인트 2

2023년 글로벌 감사위원회 서베이를 살펴보는 지배기구의 당면과제

- 감사위원회가 빠르게 발전하는 ESG 영역에 대한 대응에 진전을 보이고 있음
- 응답자의 30%는 지난 1년간 ESG 및 지속가능성 영역의 외부전문가와 경영진 배석없이 교류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함
- 소속 감사위원회가 적절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약 20%는 ESG 및 지속가능성 영역의 전문성이 감사위원회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줄 요인으로 지목함
-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ESG 안건에 대한 참여가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주요 안건 별 지배기구의 당면과제

- 2023년 예상 주요 안건으로 선정된 3가지 영역에 대한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의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음

<표 7> 감사위원회 주요 안건 별 지배기구의 당면과제

구분	주체	내용
사이버 보안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협환경, 사업의 주요위험, 통제환경 및 리스크 완화 조치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 수령 • 최고경영진 간 논의 활성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O/CISO 참여 증대 - 외부감사 법인 내 IT 파트너의 전문지식 활용 - CIO/CISO가 동료집단간 정보 공유에 참여하도록 장려 - 감사위원회의 사이버보안 효과성 평가 시 활용가능한 지표 작성
전사 리스크 관리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리스크를 파악하고 리스크 모델을 적극적으로 조정 • 경영진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신규 리스크를 식별하여 전략 상에 가장 중요한 리스크에 집중 • 경영진이 리스크 관리를 조직에 통합하는 방식과 리스크를 인식하는 방식을 이해 • 신규 리스크와 리스크 모니터링의 변화관리를 위해 전사 리스크 관리가 일상적인 감사위원회 회의에 일부로 통합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방식을 이해하고, 전사 리스크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음으로써 주요 리스크를 식별
ESG 공시 및 보고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공시하는 ESG 정보 및 지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관련 통제와 절차에 기반하는지 여부를 파악 • ESG 전략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영진이 어떻게 고려하고 조치하는지를 이해 • ESG 검증을 통해 ESG 공시 품질의 신뢰성을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가능

IV. 주요 규제 동향 ①

IFRS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기준의 방향성 및 지배기구 감독의 시사점

요약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을 통해 국제적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 한국회계기준원은 작년 10월 26일 IFRS재단과 공동으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ISSB 최종기준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지난 1월 27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관련 국제논의에 대응하고 국내기준의 검토를 위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출범함
- 이에 본고에서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ISSB 최종기준의 방향성, 향후 과제¹⁾ 및 국내 대응 현황²⁾을 파악하고, 지배기구의 감독 시사점을 살피고자 함

논의배경

- 국제회계기준(IFRS, 이하 "IFRS"³⁾)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이하 "ISSB"⁴⁾)는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을 통해 국제적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 2021년 11월 UN COP26⁵⁾에서 ISSB 설립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탈탄소 투자에 관해 강조함
 - 2022년 3월 31일, ISSB는 국제표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을 발표함

주요 안건 별 지배기구의 당면과제

- 한국회계기준원은 작년 10월 26일 IFRS재단과 공동으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ISSB 최종기준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 세미나를 개최함
 - 지난 1월 27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관련 국제논의에 대응하고 국내기준의 검토를 위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출범함
 - 이에 본고에서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ISSB 최종기준의 방향성, 향후 과제 및 국내 대응현황을 파악하고, 지배기구의 감독 시사점을 살피고자 함

1) 한국회계기준원, 「ISSB 위원장 및 부위원장 초청 공개세미나 개최」, 2022.10.26

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출범식 개최」, 2023.1.27

3)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전세계 약 146개국에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4)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ISSB): '21.11월 IFRS재단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

5)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IV. 주요 규제 동향 ①

IFRS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기준의 방향성 및 지배기구 감독의 시사점

ISSB의 방향성

- 본 세미나에서 ISSB 엠마뉴엘 파베르 위원장은 상호운용가능성을 통해 투자자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함
 - 또한, ISSB의 5가지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1> ISSB의 방향성⁶⁾

구분	내용
글로벌 기준선 (Global Base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기준선 접근법을 통해 국제 표준이 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국가별로 법령 및 규제 상황에 따라 공시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상호운용가능성 (Interoper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국제기준들과 부합하도록 상호운용 가능한 기준을 제정함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 시 기후 전환이나 사회적 측면, 다양성 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함
기존 기준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CFD⁸⁾, SASB⁹⁾ 등 기존의 비재무 공시 기준을 반영할 것이며, TCFD의 기본 골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시를 요구하며, 산업별 지표는 SASB를 참고함
GRI ⁷⁾ 와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투자자와 은행, 자본시장을 주로 고려하는 금융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¹⁰⁾을 수용하며,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¹¹⁾을 수용한 GRI와 협력하여 비재무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도 제공할 예정임

6) 한국회계기준원, 「ISSB 위원장 및 부위원장 초청 공개세미나 개최」, 2022.10.26

7)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

8)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9)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10)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환경·사회적 요인만 고려한 개념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ESG 정보를 의미함

11)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환경·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이 삶과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

IV. 주요 규제 동향 ①

IFRS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기준의 방향성 및 지배기구 감독의 시사점

ISSB의 주요 결정사항, 최종기준의 방향성 및 향후 추진 계획

- 본 세미나에서 ISSB 수 로이드 부위원장은 IFRS S1, S2 공개초안에 대한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와 ISSB의 주요 결정사항, 최종기준의 방향성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제시함¹²⁾

<표 2> IFRS S1, S2 공개초안의 주요 의견 및 ISSB 주요 결정사항¹³⁾

구분	주요 의견	주요 결정사항
IFRS S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접근 방식 및 목표 • (중요성 개념에서 '기업가치'의 필요성, '유의적인(significant)' vs '중요한(mate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치' & '유의적인' 용어 삭제 •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기회의 식별 시 고려요소 및 프로세스를 논의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이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시점에 대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보고 시점은 향후 논의 진행 예정¹⁴⁾
IFRS S2 ¹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회복력 평가 시 시나리오 분석의 구체적 수행방법의 불명확성과 비용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적용을 위한 적용지침 마련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pe 3의 측정 방법론과 배출량 공시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pe 3 측정에 대한 상세 지침 제공 예정 • Scope 3 적용을 위한 유예기간(1~2년) 필요성을 검토 중¹⁶⁾

- IFRS S1, S2 최종기준안은 올해 6월 내에 발표될 예정임¹⁷⁾

12) 한국회계기준원, 「ISSB 위원장 및 부위원장 초청 공개세미나 개최」, 2022.10.26

13) 작년 10월 26일 개최된 ISSB 초청 공개 세미나에서 ISSB 부위원장의 발표 내용에서 발췌

14)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다만 시행 첫해에는 공시 시기 적용을 유예해주는 것으로 결정됨

15) SASB 기준을 활용한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금융배출량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자발적 공시로 남기는 것으로 결정됨

16) 작년 12월, ISSB 회의에서 IFRS S2 시행일 이후 1년간 Scope 3 공시 면제의 일시적 적용이 결정됨

17) 지난 2월 16일 ISSB 회의에서 IFRS S1, S2 공시기준 최종안이 승인됨

IV. 주요 규제 동향 ①

IFRS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기준의 방향성 및 지배기구 감독의 시사점

ISSB 향후 과제

- 본 세미나에서는 ISSB 기준의 향후 과제에 대해 국내 기업, 자본시장 관계자, 정부 입장의 의견이 논의됨

<표 3>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향후과제 관련 논의점¹⁸⁾

구분	내용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보고위치에 자율성 부여와 소규모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공시기준이 필요 - ISSB 기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EU 및 미국의 요구사항과 통합이 중요
자본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SB 기준의 보고시기, 보고위치 등의 요구사항에 탄력적 적용과 구체적인 지침 및 사례가 필요 ISSB 기준의 근간이 될 SASB 기준의 중요성 관점에서 국내 공시 현황을 검토하고, 중요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 유인체계가 필요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공시와 같은 자본시장 내 인프라 확충이 중요 ISSB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ISSB는 기준 제정에 있어 유연성이 필요함에 동의함. 다만, 보고 위치 및 시기와 관련하여 재무정보 및 비재무정보가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형태로 정보 이용자에 함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내 제안과 관련 실용적인 방법 모색의 계획을 밝힘

- ISSB 기준의 요구사항을 기업이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한편, 자본시장 내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원활한 자금조달, 자본비용 절감 등의 효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함

18) 한국회계기준원, 「ISSB 위원장 및 부위원장 초청 공개세미나 개최」, 2022.10.26

IV. 주요 규제 동향 ①

IFRS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기준의 방향성 및 지배기구 감독의 시사점

국내 대응현황

- 작년 12월 21일, I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SSAF¹⁹⁾의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됨에 따라 향후 ISSB의 기준 제정 과정에서 국내 경제·산업 여건,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ISSB측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²⁰⁾
-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 관련 국제 논의에 대응하고 국내기준 검토를 위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²¹⁾가 설립되어 지난 1월 27일 출범함²²⁾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외 기준제정기구와의 국제협력 등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국제논의에 대응할 예정임
 -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ESG 공시활동을 지원할 예정임
 -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경제·산업 여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내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ESG공시기준안을 검토하는 등 ESG 공시기준 제정을 지원할 계획임

지배기구 감독의 시사점

- ESG 요소가 기업의 목적 정립 및 전략 수립, 사업 개발, 실행, 조직 운영, 성과 창출 등 전 영역에 걸쳐 통합되고 실현되는 방식에 대한 이사회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²³⁾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야 함

<표 4> 이사회 ESG 감독 고려사항²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감독 거버넌스 개편 • ESG 경영체계 파악 • 감사위원회의 ESG 감독 기능 강화 • 기업의 ESG 경영 성숙도 파악 • ESG 내재화 추진 • 투명한 ESG 공시

19)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

20) 금융위원회, 「한국, IFRS재단의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초대 회원국으로 선임」, 2022.12.22

21) 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회계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원 내 설립되는 위원회

2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출범식 개최」, 2023.1.27

23)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2022.12

24) 감사위원회포럼, 「2022년 제3회 정기포럼 - 감사위원회의 ESG 대응 관련 글로벌 현황 및 시사점」, 2022

IV. 주요 규제 동향 ①

IFRS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기준의 방향성 및 지배기구 감독의 시사점

- 감사위원회는 ESG 리스크 파악은 물론, 해당 리스크가 기업에 미칠 재무적·비재무적 영향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감독 영역 전반에 관련 리스크의 효과적인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을 위한 기능과 역할 수행이 요구됨

<표 5> ESG 관련 감사위원회 감독 영역별 고려사항²⁵⁾

구분	내용
정보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공시 정보의 질 향상(중대 리스크 및 기회, 대응 전략 관련 정보 등 포함) 기후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을 반영한 기업 자산 및 부채 평가 명확한 공시 체계 및 절차 수립,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업 추진
리스크 및 내부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존 또는 잠재하는 단·중·장기 ESG 중대 리스크 식별 및 평가 (재무 관련 사항에서 가치사슬 전반으로 범위 확대) 기후 시나리오 분석 기반 기업 대응 전략 마련 및 의사결정 사업 특성을 고려한 내부 통제
내부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리스크를 고려한 절차 진행 내부 감사에 필요한 ESG 전문성 및 역량 확보 ESG 관련 경영진 보고사항에 대한 감독 수준 강화 ESG 목표 및 성과, 측정지표 관련 정기적 감독 이행
외부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및 기타 ESG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 등을 고려한 감사 및 인력 활용 계획 평가 ESG 데이터 및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수준 검토 공식적인 감사 영역 외 기타 중요 영역에 대한 제3자 검증 고려

25) 감사위원회포럼, 「2022년 제3회 정기포럼 - 감사위원회의 ESG 대응 관련 글로벌 현황 및 시사점」, 2022

IV. 주요 규제 동향 ②

2023년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추진과제

요약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12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강화', '기관투자자 책임투자 활성화'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함
- 본고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지배기구가 참고할 수 있는 추진과제별 세부사항과 이에 따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음

2023년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추진과제

-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12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본고에서는 그 중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추진과제를 살펴보았음

<표 1> 2023년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추진과제¹⁾

1.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으로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 제고	
① 외국인 ID제도 폐지 및 통합계좌 활성화 등 외국인 투자편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및 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 장외거래 사후보고 범위 확대 등
② 상장사에 대한 영문공시제도 단계적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 : ('24년) 자산 10조원 이상 → ('26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공시내용 :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2.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를 통한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① 주주친화적인 배당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당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배당액 결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상법 유권해석(법무부), 자본시장법 개정 • (관행) 개선방안을 상장협 등 표준정관에 반영, 개선여부를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②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 강화, 과징금 상향 등 대량 보유보고의무(5%룰)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일반주주 권익 제고	
③ 스투어드십 코드 개정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투어드십 코드에 ESG 요소 반영, 주주활동 공시 강화 등

1) 금융위원회,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023.2.3

IV. 주요 규제 동향 ②

2023년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추진과제

<표 1> 2023년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추진과제 (계속)

3. 자본시장 투자기반 확충 통한 자금조달 환경 개선

- ① 공모펀드 수수료·보수체계 합리화, 수익률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 마련
- ② 개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 ISA비과세 혜택대상 상품에 회사채 및 K-OTC 시장내 비상장주식 등 포함
- 고위험·고수익 채권(BBB+이하) 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제공 등

세부 설명

-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한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영문 DART 공시정보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다수의 외국인 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은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영문공시를 권고하고 있음

<표 2>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 영문공시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지배구조 모범규준	<p>2.2.6 외국인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감사보고서 및 중요한 수시공시 사항을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영문공시의 필요성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주의 숫자 및 지분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주주를 감안하고, 나아가 기업이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영문공시의 필요성이 크다. 공시에 있어 한글과 영문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다수의 외국인 주주가 존재하는 기업만이라도 영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 한국거래소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6년 5월 영문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하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영문공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한 바 있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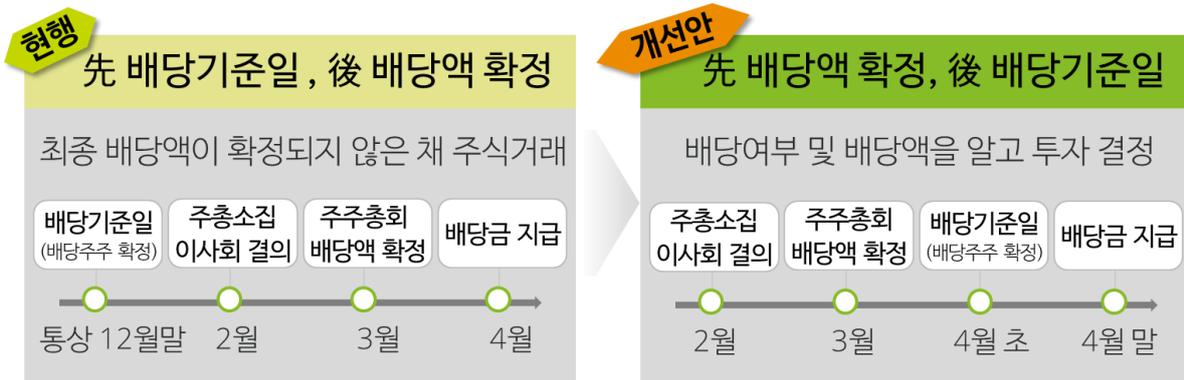
2) 한국거래소. 「외국인투자자 등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영문공시 활성화 추진」, 2016.5.9

IV. 주요 규제 동향 ②

2023년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추진과제

-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게 투자자가 배당금을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그림 1> 배당제도 개선안³⁾



- 결산배당은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총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유권해석함

<표 3> 결산배당 관련 법규

구분	내용
상법	<p>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p> <p>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p> <p>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p> <p>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3) 금융위원회,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2023.1.31

IV. 주요 규제 동향 ②

2023년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추진과제

- 상장사 분기배당도 배당액을 우선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23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표 4>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분기배당 개정안 4)

현행	개정안	※추후 수정·보완 가능
<p>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p> <p>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u>이사회 결의로써</u>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u>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u></p> <p>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u>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u></p>	<p>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p> <p>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u>3개월·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써</u>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 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삭제</p> <p>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u>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 관행 개선을 위해 '24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고, 구체적인 배당정책과 결정과정을 공개해야 함

□ 한편, 2023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서는 회계 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와 회계법인 역량 제고가 언급됨 5)

- 회계부정 위험요소별 회계오류 적발률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회계심사 대상 선정기준을 재정비할 것임
- 중대한 회계위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회계분식에 가담하거나 조력한 기업은 수사 및 세무당국 등에 적극 통보할 것임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평가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 중소기업의 감사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 제정을 지원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실무가이드 및 모범사례를 마련할 예정임

4) 금융위원회,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2023.1.31

5) 금융감독원,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2023.2.3

IV. 주요 규제 동향 ②

2023년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추진과제

추진과제 조치사항 및 시행 일정

□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2023년 추진과제의 조치사항 및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음

<표 5> 2023년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추진과제의 조치사항 및 시행 일정⁶⁾

주요 정책 과제	조치사항	시행시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자본법 시행령 개정	3분기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자본시장법 개정	-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발표	4분기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시 과징금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
기관투자자 책임투자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	연중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 방안 마련	방안 발표	연중
개인 채권투자 활성화	조특법 개정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유의사항

- 이사회는 배당을 위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 승인 시 배당정책 결정에 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수행해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감독해야 하므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에 따른 배당액이 회사의 배당정책에 부합되는지를 살펴야 함⁷⁾
- 감사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되는 배당절차 개선 여부와 배당관련 정보(구체적인 배당정책, 결정과정 등)가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살펴야 함
 - 공시 정보의 일차적 책임은 공시 담당자에게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정보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없는지 주의가 필요함
- 그 외에도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강화 및 영문공시 의무화에 대응하여 감사위원회의 공시정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6) 금융위원회,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023.2.3

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2 상장회사 실무해설집 I(주주총회, 임원 선해임, 정관 작성, 배당)」, 2022.12

IV. 주요 규제 동향 ②

2023년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추진과제

-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주요 기관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 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이 회사와 이해관계자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함
 - 또한, 기관투자자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전체 이해관계자간 정보 비대칭을 유발하지 않도록 제공될 정보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닌지, 편향되지 않고 완전한 정보인지, 적법하게 제공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V. FAQ ①

주주제안권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Q. 이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연대에서 주주제안이 서면으로 들어옴. 주주제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 주주제안 행사 시 회사의 대응 ¹⁾
 -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야 함
 - 주주제안권자의 법상 지분요건 충족 여부

주주제안권 행사 지분요건 ²⁾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상법 363조의2 제1항)
- (상장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자본금 1천억원 이상 회사의 경우 0.5%) 이상, 6개월간 계속 보유한 주주 (상법 제542조의6)
- (금융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1%이상, 6개월 간 계속 보유한 주주(금융사지배구조법 제33조 제1항)

-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상 제안기간 준수 여부 ³⁾
 - ✓ 정기총회의 경우 직전연도 정기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임시총회의 경우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해야 함 (상법 363조의2 제1항, 제2항)
- 제안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 여부
 - ✓ 회사는 상법에 규정된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주주의 제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음

주주제안 거부 사유(상법 시행령 제12조)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 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주주가 권리는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상장사만 해당)
-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2 상장회사 실무해설집 I (주주총회, 임원 선해임, 정관 작성, 배당)』, 2022.12

2) 수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합쳐서 충족하여도 무방함

3) 제안기간 미준수의 문제는 주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이루어질 때의 문제임.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행사되어야 하고 소집통지는 총회일의 2주 전에 발송되므로 주주제안권 행사 시점에서 주주가 주주총회일을 알기 어렵기 때문임. 그러나 정기총회의 경우 개최일이 일정하므로 6주 전의 기간을 준수하여 안건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V. FAQ ①

주주제안권

- 지분보유비율, 제안기준을 충족하고 제안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지 않으며 주주제안 거부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해야 함(상법 제363조의2 제3항)
 -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한 경우, 제안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상법 제363조의2 제3항)

□ 주주제안 거부 시 효과 ⁴⁾

- 주주제안을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주주가 제안한 의안과 상충되는 회사측 의안의 가결여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상이함
 - 주주가 제안한 의안과 상충되는 회사측 의안이 가결된 경우, 그 결의는 결의방법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됨(상법 제376조 제1항)
 - ✓ 주주제안을 부당하게 거부한 이사는 제안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상법 제401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상법 제635조 제1항 제21호)
 - 주주제안과 상충되는 회사측 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 결의취소의 소는 해당되지 않고 주주제안을 부당하게 거부한 이사에 대한 제안주주의 손해배상책임 청구(상법 제40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 발생할 수 있음(상법 제635조 제1항 제21호)
-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아닌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키는 형태의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음

[참고판례] 서울북부지법 2007.2.28. 2007카합215 결정

상법상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 권리의 일환으로서 주주제안권과 병행하는 별개의 권리(소수주주는 양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하고,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반드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절차를 그 구제절차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주주제안권 자체의 실현을 위하여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키는 형태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두고 적법한 구제절차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제도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2 상장회사 실무해설집 I (주주총회, 임원 선해임, 정관 작성, 배당)』, 2022.12

V. FAQ 2

재무제표 감리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Q. 당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착수 공문을 수령하였음. 재무제표 감리가 착수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미 실시되는 경우도 있는지?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집행기관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수 있음(외부감사법 제26조 제1항 제2호)¹⁾

1) 재무제표 심사결과에 따른 감리의 착수 사유

-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실시 사유가 됨

감리 실시 사유가 되는 위법사항 (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 착수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수정공시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재무제표 심사 진행중에 재무제표 감리로 전환되었다면 중과실 이상 혐의가 이미 발견되었다는 의미임²⁾

2) 감리 등 업무결과 위법사항 발견

- 감리집행기관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수행한 결과로 재무제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4호)

3)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대상 회사 통지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감리 대상 회사를 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5호)

4) 회사의 감리 신청

- 회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면제받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할 수 있고(외부감사법 제11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이에 따라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에 재무제표 감리를 신청한 경우 감리 실시 사유가 됨(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6호)

5) 혐의 입수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하는 경우, 금융사 검사 등 금융감독원장의 업무 수행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8호)

1)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신뢰부감사법 가이드 북』, 2022.12

2) 임창주, 『회계감리제도에 대한 이해 및 주요 지적·조치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무 유의사항 안내』, 법무법인 율촌, 2021.7

V. FAQ 2

재무제표 감리

- 회사가 처음부터 재무제표 감리 공문을 수령하는 경우 중과실 이상 혐의일 가능성이 높음³⁾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감리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⁴⁾
 - 1) 수사 및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 (수사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는 제외하고) 해당 혐의 관련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6항 제1호)
 - 2) 강제조사가 필요한 경우
 - 해당 혐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으나 사안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6항 제2호)
 - 3) 사안이 경미한 경우
 - 해당 사안이 경미하여 외감규정 시행세칙의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규정된 위반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Ⅳ.2.)에 미달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6항 제3호)
 - 4) 감사조서 보존기간 경과
 - 외부감사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6항 제4호)
 - 5)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적절한 경우
 -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쟁점 관련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함(외감규정 제23조 제4항)
 - 이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이 보고한 내용 중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회사의 해석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6항 제5호)

3) 임창주, 『회계감리제도에 대한 이해 및 주요 지적·조치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무 유의사항 안내』, 법무법인 율촌, 2021.7

4)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신외부감사법 가이드 북』, 2022.12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황현지 Consultant

Consultant /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Tel: +82 2 6138 6815

E-mail: hyunjihwan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